

(사)한국상사법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사법의 새로운 과제

일 시 : 2020. 2. 13(목)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사)한국상사법학회

# [사]한국상사법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 대 주 제 :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사법의 새로운 과제
- 일 시 : 2020. 2. 13(목) 13:30 ~ 18:00
-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 주 최 : (사)한국상사법학회
- 세부일정
  - 등 록 : 13:00 ~ 13:30
  - 개 회 식 : 13:00 ~ 14:00
    - 개회사 : 김순석 (사)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환영사 :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제발표 : 14:00 ~ 17:40
    - 전체사회 : 김광록 교수(충북대), 학술사회 : 천경훈 교수(서울대)
  - 정기총회 : 17:40 ~ 18:00

세션	발표자	주제	사회자	토론자1	토론자2
제1세션 14:00~14:50	최문희 (강원대)	인공지능과 기업지배구조	김정호 (고려대)	이중기 (홍익대)	손창완 (연세대)
제2세션 14:50~15:40	최경진 (가천대)	기업활동과 상거래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정완용 (경희대)	윤영신 (중앙대)	이나래 (블록크래프터스 변호사)
Coffee Break (15:40 ~ 16:00)					
제3세션 16:00~16:50	천창민 (서울과기대)	P2P 대출 규제법안의 분석	고동원 (성균관대)	노태석 (금융위원회)	성희활 (인하대)
제4세션 16:50~17:40	김준영 (감정법률사무소)	보험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맹수석 (충남대)	한기정 (서울대)	유주선 (강남대)
(사)한국상사법학회 정기총회 (17:40 ~ 18:00)					





(사)한국상사법학회 2019 동계학술대회 제1세션

# 인공지능과 기업지배구조

발 표 자	최문희 (강원대)
사 회 자	김정호 (고려대)
토 론 자	이중기 (홍익대) 손창완 (연세대)

# 인공지능(AI)과 회사지배구조의 점점에 관한 小考

## - AI 활용에 따른 회사법적 논점 개관 -

최 문 희 \*

### I. 들어가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 Künstliche Intelligenz)이라는 용어는 이미 1955년에 사용되었지만,<sup>1)</sup>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아마도 2016년 구글 딥마인드사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프로 九단과의 바둑대국<sup>2)</sup>이 있을 것이다. “우주 내 원자 수 이상의 거대한 탐색 공간 속에서 직관, 상상력, 지적 깊이를 요구하는 바둑”<sup>3)</sup>에서 알파고가 과거 10년간 세계대회를 제패했던 人間界 최강자를 상대로 -감히- 도전하고, 더구나 승리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과연 인공지능으로 대체불가능한 인간만의 영역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었다.

필자는 위와 유사한 의문을 이미 2014년에 회사법학자라면 흥미로워할 만한 ‘인공지능 이사(AI director 또는 robo-director)’에 관한 뉴스를 접하였을 때 가진 적이 있다. 홍콩 소재 금융회사인 ‘딥날리지벤처스(Deep Knowledge Ventures)’에서 ‘바이탈(Vital; Validating Investment Tool for Advancing Life Sciences)’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사님’이 되었다는 기사였다.<sup>4)</sup> 바이탈이 이사회에서 ‘인간 이사(human director)’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sup>5)</sup> 적어도 회사의 투자결정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바이탈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데이터에 관한 추세를 밝히기 위하여 실사를 하고 과거의 데이터 세트를 자동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6)7)</sup> 홍콩 회사법에 의하면 바이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oi@kangwon.ac.kr.

1) John McCarthy/Marvin L. Minsky/Nathaniel Rochester/Claude E. Shannon, 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gust 31, 1955. 이 글은 AI Magazine Vol. 27 No. 4 (2006)에 수록되어 있다.

2)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2016. 3. 9.부터 3. 15.까지 총 5국). 총 4승을 거둔 알파고는 대국 종료 직후 한국기원 총재로부터 명예 프로 九단 단증을 수여받았고, 실제로 한국기원 기사데이터에 九단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단증에는 제001호 명예 九단 ALPHAGO라고 하고, “귀하는 평소 기도연마에 정진하고 기사로서 人格陶冶(인격도야)에 힘써 기품이 입신의 역에 이르렀으므로 九단을 면허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인격’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으로서의 품격’, ‘도야’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를’으로 각각 정의되므로 ‘인격도야’라는 말이 인공지능에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의문이 있다. 탈인간중심적 인격의 개념의 재정립의 문제를 제기한다.

3) 옥스퍼드 대 강연에서의 알파고 개발자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의 발언이다.

4) “A Venture Capital Firm Just Named An Algorithm To Its Board Of Directors — Here’s What It Actually Does,” Business Insider, May 13, 2014, <https://www.businessinsider.com/vital-named-to-board>; “Algorithm appointed board director,” BBC May 16, 2014, <https://www.bbc.com/news/technology>.

5) ‘인공지능 이사’ 바이탈은 전세계에서 수집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토해서 자금조달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예측을 한 결과를 회사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보도로는 상계 Business Insider 기사.

6) Ellie Zolfagharifard, “Would you take orders from a ROBOT? An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the world’s first company director,” Daily Mail 인터넷판, May 19, 2014,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2632920/Would-orders-ROBOT-Artificial-intelligence-world-s-company-director-Japan.html>.

탈은 이사로서의 의결권이 부여되거나 이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탈은 완전한 인간 이사와 같은 이사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이사’로서 결정할 때 바이탈을 일종의 참관자(observer)로 의사결정에 참작하였을 뿐이라는 입장도 있다.<sup>8)</sup>

위 두 가지 예는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진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 변화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알파고’와 ‘바이탈’의 예에서 보듯이 AI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창조적 작업을 하고, 인간의 지시 없이도 학습(learning)한 것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AI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고 인간이 의식하든 않든 산업과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sup>9)</sup>

AI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즉응하여 전세계적으로 AI와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입법,<sup>10)</sup> 기업의 투자, 기술개발, 제품 및 서비스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육성 의지를 밝혀 왔고,<sup>11)</sup>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왔다.<sup>12)</sup> 국회에는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활성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에 관한 주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sup>13)</sup>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스마트도시 분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sup>14)</sup> 국내 법학계에서도 AI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출간되고,<sup>15)</sup>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7) 딥날리지벤처스의 공동창업자 드미트리 카민스키(Dmitry Kaminskiy)에 의하면 바이탈로 하여금 최초로 빅데이터 투자분석을 하도록 하고 투자위험 판단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50개 이상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많은 회사를 분석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패턴과 요소 분석이 더 어려웠지만, 바이탈을 통해서 수천 개 회사를 분석하면서 실패 위험이 있는 회사를 예측할 수 있는 일정한 패러미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Nicky Burrige, “Artificial intelligence gets a seat in the boardroom,” Nikkei 인터넷판 May 15, 2017, <https://asia.nikkei.com/Business/Artificial-intelligence-gets-a-seat-in-the-boardroom>.

8) 카민스키에 의하면 바이탈의 역할은 인간 이사와는 다소 달랐다. 이사회가 바이탈에게 observer 지위만 가진 이사로 다루었고, 바이탈의 확증이 없으면 투자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Burrige, 상계 Nikkei 기사.

9) 가전제품,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운송, 농업, 금융, 마케팅 및 광고, 과학, 건강, 형사 사법, 보안, 공공 부문 및 증강·가상현실과 같은 모든 분야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OECD Committee for Digital Economy Policy,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June 2019, Ch.3.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사기 탐지, 신용도 평가, 고객 서비스 비용 절감, 거래 자동화, 법률 준수 지원 등에 활용); 마케팅 및 광고 분야(소비자 행동에 관한 데이터를 마인팅하여 콘텐츠, 광고, 상품 및 서비스, 추천 상품 및 가격을 타겟팅하고 개인별 맞춤화); 의료 분야(조기에 질병 및 발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치료법 및 약물을 발견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안); 형사 사법(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예측성 정책 결정과 범죄 재발 위험을 평가).

10) 국제적 차원의 대응으로 OECD Committee for Digital Economy Policy,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June 2019. 이 책은 인공지능의 이용과 그 영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술적 경제적 문제 전반을 정리하고 있고,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OECD는 AI에 관하여 각국 정부가 승인한 최초의 국제기준 “The OECD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May 2019)” 를 제정한 바 있다.

11) 중소기업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 TF 설치」, 2019. 7. 23.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19. 12. 17; 2016년에 알파고에 자극받은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연구개발(R&D) 투자방향」, 2016. 3. 11.

13)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제정안)(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5749)(2017. 2. 22);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2593)(2019. 9. 23);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3922)(2019. 11. 21) 외.

14) 입법현황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신용우,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제87호, 2019. 12. 16. 참조.

포럼도 결성되었다.<sup>16)</sup>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학계<sup>17)</sup>의 전 영역에서 AI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sup>18)</sup>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9)</sup> AI 기술의 발전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분석할 양이 많고 복잡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알고리즘은 인간의 판단을 능가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반이 2025년에는 AI가 회사의 이사회에 동석할 것이라고 추측한 것처럼,<sup>20)21)</sup> AI에 의해 기업활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이사회가, 그리고 주주총회도 영향을 받는다.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sup>22)</sup> 또는 지원한다면 인간 이사, 직원만을 상정하여 마련된 회사법은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서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따른 회사법의 법과 실무의 대응에 관하여 몇 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회사법에서 회사 기관의 구성, 운영으로부터 회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은 인간 이사의 틀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지 AI의 등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AI의 등장에 따라 회사와 회사법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AI는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회사법에서 무엇보다도 영향을 받는 영역은 업무집행과 경영영역이다. AI의 등장은 인간의 개념-이사의 자격 요건 변화가 필요한지부터 의무위반, 책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바이탈’ 사례는 ‘바이탈’이 인간 이사와 동등한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긴

15) 고유강, “법관업무의 지원을 위한 머신러닝의 발전상황에 대한 소고,” Law & Technology 제15권 제5호, 2019. 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3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서는 많은 문헌이 출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권영준/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권(2016.6), 한국민사법학회, 449면; 이나래,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방안,” Law & Technology 제15권 제5호, 2019. 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35면; 한국인공지능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2(다양한 법분야의 학자, 실무가가 공저한 것으로서 상법 분야 주제는 자율주행차(이중기 집필), 로보어드바이저(맹수석 집필)가 수록되어 있다).

16)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포럼이 2020. 1. 30. 출범하였다. “AI 하기 좋게” ...법·제도 ‘민관싱크 탱크’ 나왔다, 전자신문 인터넷판, 2020. 1. 30.

17) 철학, 수학, 경제학, 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 컴퓨터공학, 제어공학에서 학제적 연구로서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8) 법과 실무에 대한 AI의 영향의 함의와 과제를 탐색하려는 시도가 학계와 실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Woodrow Barfield/Ugo Pagallo,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12; 고유강, 전개논문, 3면; 近内京太, AI搭載ロボットによる不法行為責任のフレームワーク, NBL No.1157 (2019. 11. 1), 25면; 中本和洋, AIと弁護士業務の未来 `NBL No.1113 (2018. 1. 1).

19) 외국에서의 논의는 Barfield/Pagallo, 전개서, Ch.25; Armour/Eidenmüller, Selbstfahrende Kapitalgesellschaften?, ZHR 183 (2019), 169; Florian Möslein, Digitalisierung im Gesellschaftsrecht: Unternehmensleitung durch Algorithmen und künstliche Intelligenz?, ZIP 2018, 204; Dirk Zetzsche, Corporate Technologies-Zur Digitalisierung im Aktienrecht, AG 2019, 1; 松村英寿, 取締役の経営判断と善管主義義務に及ぶ影響, 資料版 商事法務 No. 339, 2017. 필자는 논점을 간추리고 정리하는 데 이들 문헌의 논의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20) World Economic Forum,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Survey Report, September 2015, p.21.

21) ‘바이탈’ 처럼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적으로는 AI가 상당한 정도로 이사회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Tony Featherstone, “Governance in the new machine age,”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March 24 2017, <https://aicd.companydirectors.com.au>.

22) Barfield/Pagallo, 전개서, Ch.25 Robots in the boardroom, p. 646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조만간 AI가 이사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회사의 의사결정에서의 AI의 영향력을 말해준다. 이사회에서 AI의 판단을 고려하고, AI의 분석구조가 인간과 다른 경우에는 전통적 회사법은 AI가 존재하는 이사회와 아귀가 잘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AI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AI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한다(II). 본론에서는 AI와 이사, 이사회 해석상 논점을 AI 이사의 가부, AI와 이사의 의무 및 경영판단원칙, AI에 대한 의사결정 위임의 문제(III), AI와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의 해석상 쟁점과 실무에 대한 영향(IV)으로 나누어 AI의 활용이 회사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AI의 존재에 회사법이 대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II. AI에 관한 기초적 고찰

### 1. AI 관련 용어의 기초 개념과 발전사<sup>23)</sup>

#### 1.1 AI의 정의

AI가 활용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AI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AI의 기초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AI는 인공지능으로 번역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AI라고 칭하고, AI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인간(human)이라고 쓰기로 한다. 예를 들어 AI 이사(AI 또는 robo-director, 로보 디렉터)에 대응되는 의미로 인간 이사(human-director)를 쓴다.

주지하듯이 AI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인공지능 개념의 시발점으로 널리 알려진 1956년의 다트머스 연구프로젝트(1956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위한 제안서에서였다.<sup>24)</sup> 존 맥카시(John McCarthy)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1955년의 제안서에서 “인간처럼 행동하고(acting humanly) 지능이 있는(intelligent)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계(machine)” 라고 언급한 바 있다.

AI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인간이 하는 생각과 행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think and act like humans) 기계(소프트웨어, 컴퓨터, 로봇), 또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행동하는(see, hear, talk, and act like humans) 기계, 사람이 하면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계, 현 단계에서 사람이 기계보다 잘 하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게 하는 기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점이

23) 이 절의 설명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필자 수준의 문외한인 ‘상법’ 연구자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다룬 여러 문헌에서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내서로는 인공지능의 기초적 지식을 얻기 위한 입문서로 오니시 가타코(저)/전지혜(역), 「가장 쉬운 AI(인공지능)입문서」, 아티오, 2019. 10을 참조하고, 좀 더 심화된 법적 쟁점의 이해를 위한 기초로 한국인공지능학회, 전게서(주15)를 참조하고, 인공지능 전문 다수의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였다.

24) McCarthy et al., 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gust 31, 1955.

중요하고, (인간이 못하는) 합리적으로(rationally)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라는 점이 추가될 수 있겠다.

## 1.2 AI의 역사와 머신러닝, 딥러닝

AI의 역사와 구분은 크게 제3기로 나뉜다. 1950년대부터 튜링의 사고기계 제안(1950),<sup>25)</sup> AI의 탄생(1956)<sup>26)</sup> 후 1970년대까지가 제1차 태동기이다. 제2차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등장한 1980년 이후의 시기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으로서 ‘자연스러운 대화로 호텔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나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추론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제3차는 이른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또는 기계학습이라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등장한 시기이다. 머신러닝 데이터에서 패턴과 규칙을 컴퓨터 ‘스스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스스로를 향상시킬 줄 아는 기계”인데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어떤 것이 더 발전된 방향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계, “프로그램화될 필요 없이 학습을 진행할 줄 아는” 것이다. 과거에는 ‘만약 X는 Y’라는 규칙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X가 입력된 경우 Y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Z가 입력되면 규칙에 없어서 대응하지 못하였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Z라는 미지의 입력내용에 대해서도 컴퓨터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생각과 응답을 할 수 있다.<sup>27)</sup>

머신러닝보다 학습방법 중 하나로 머신러닝의 중요한 축이 딥러닝(deep learning)이다. 머신러닝이 일반적으로 “미리 제공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예측하는 기술이라면, 딥러닝은 “학습 자체도 스스로 판단하여 학습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알파고가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 2. 회사에서의 AI에 기반한 의사결정

회사지배구조에서 어느 부분이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AI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거나 심지어 대체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의사결정이 복잡하면 할수록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informed, rational decision)을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더 많이 요구된다. 컴퓨터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big data)’의 처리, 즉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를 관리

25) 튜링 테스트란 대화형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유명한 방법이다. 인간(심판)으로 하여금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AI 또는 제3자와 대화하도록 한 후 인간이 대화 상대가 자신의 대화상대가 AI인지 인간인지 구분하도록 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 심판과 일정 시간 대화한 후 심판을 속였을 때 합격하게 된다.

26) AI라는 말이 1955년에 처음 사용되고 1956년에 열풍을 맞는다. 그 주역은 ‘엘리자’인데 음성이 아닌 문자로 대화할 수 있었다.

27) 머신러닝은 지도형(supervised) 머신러닝과 비지도형(unsupervised) 머신러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미리 정답 데이터(이를 학습훈련 데이터라고 한다)를 제공한 후 거기에서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학습훈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시행하는 머신러닝 방법이다.

가능한 소규모의 데이터로 변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sup>28)</sup>

이와 같이 AI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무엇보다도 AI의 활용으로 도움을 받는 기관은 이사회일 것이다. 물론 주주도 의사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사가 수행하는 의사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맡고 중요한 전략적 경영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이 회사 내에서 가장 복잡한 의사결정이다. 이사의 의사결정은 다수의 다른 선택지 중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회사에서 주주가 하는 의사결정이란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 의결권 행사 시 찬성·반대 또는 기권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 택일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AI가 회사 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이다.

### 3. 이사회에서의 AI의 역할과 쟁점

AI는 장래 이사회 업무집행 차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정보의 제공,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인간 이사가 판단하는데 조언을 얻기 위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 M&A거래에서 실사(due diligence)시 자료의 검사 및 평가를 위해서 활용되거나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조항을 검색하고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종합할 수 있으며, AI를 활용한 모범계약서의 작성도 이미 가능하다고 한다.

이사회에서 AI가 활용되는 양상은 AI와 인간 이사가 의사결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sup>29)</sup> 제1단계(Assisted AD)에서는 AI는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의사결정은 인간만이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AI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작업에서 인간을 대신하였다. 산업로봇이 생산에 투입된다거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화에 응답(ARS)하거나 정보를 찾아주는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AI는 인간보다 빠르고 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간을 돕지만, 인간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AI는 인간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2단계(Augmented AD)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상호간에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분담한다.

3단계(Autonomous AD)는 자율적 AI로서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인간인 의사결정자가 기계를 신뢰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권 자체를 기계가 갖는다는 점에서 제1단계, 제2단계와 획기적으로 다르다. 인간이 점점 더 기계의 판단능력을 신뢰하거나 판단을 신속하게 해야 하거나 인간이 분석하여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로 기

28) Barfield/Pagallo, 전계서, Ch.25, Robots in the boardroom, p.655.

29) Anand Rao, "AI: Everywhere and Nowhere (Part3)-AAAI: assisted, augmented and autonomous intelligence," June 8, 2016, <https://www.insurancethoughtleadership.com>.

계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는 단계이다.

회사 내, 특히 이사회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의사결정권을 전부 또는 일부 갖는 제1단계 및 제2단계와 기계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제3단계가 구분된다. 전2자에서는 AI는 인간을 원조할 뿐이지만 후자에서는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자에서는 AI가 인간이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이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2자에서는 이사회가 의사결정 시 AI의 조언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사회가 AI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항을 바꾸어 III.이하에서 검토한다.

### III. AI와 이사, 이사회

#### 1. 개관

AI의 등장은 이사회 의 풍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의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무수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우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er)<sup>30</sup>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영역에서 AI가 경영상 판단을 도와줄 수 있다. AI가 인간 이사의 경영을 보조할 수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이사를 인공지능 이사(AI 또는 robo-director)가 대체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대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인간 이사의 틀에 맞추어진 회사법이 AI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문제된다.

AI 이사가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입법론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어서 AI를 이사회에서 활용 또는 불활용하는 경우에 이사의 의무, 경영 판단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 2. 이사의 자격과 AI 이사의 허용 여부

##### 2.1 자연인 이사, 법인 이사, AI 이사의 비교

###### 2.1.1 자연인 이사 vs. 법인 이사

바이탈(Vital)이 인간 이사와는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바이탈의 분석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이사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도 가능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전세계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5년에는 최고경영자 중 45퍼센트가 AI에 의해

30) 금융회사들은 그 고객을 위해서 투자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감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대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sup>31)</sup> AI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회사법에서 허용될까?

현행 상법상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登記되어야 하고(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수임인으로서의 관계에 서며(제382조 제2항),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에 이사후보자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제542조의4 제2항). 이들 규정은 이사가 자연인일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sup>32)</sup> 법인 이사 허용 여부에 관해서 해석론이 갈린다. 압도적 다수설<sup>33)</sup>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 이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사가 자연인일 것을 요구하는 입장은 외국의 입법례도 같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 회사법은 이사는 ‘자연인(natural person)’ 일 것을 요구한다.<sup>34)35)</sup> 이 규정은 당초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규정에 의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sup>36)</sup> 미국 모범회사법(MBCA)<sup>37)</sup>, 독일 주식법<sup>38)</sup>, 일본 회사법<sup>39)</sup>도 이사의 자격을 자연인으로 제한한다.<sup>40)</sup> 어느 경우든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법령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법인 이사를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의 자격을 자연인에 한정하는 입장은 실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sup>41)</sup> 대표이사의 피선거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sup>42)</sup> 회사의 관리·운영은 궁극적으로 자

31) World Economic Forum,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Survey Report, September 2015, p.21.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는 법인 이사(집합투자업자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33)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5(제6판), 760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2018(제3판), 341면;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제4판), 462면; 김흥기, 「상법강의」, 박영사, 2016(제2판), 561면;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0(제10판), 990면;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제26판), 646면.

34) Del. Code Ann. tit.8, § 141(b).

35) 캘리포니아주 회사법도 같다. Cal. Corp. Code Section 164.

36) Marc J. Lane, Representing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and LLC Managers, 2019. 12, 3<sup>rd</sup> ed., Wolters Kluwer Legal & Regulatory U.S., p.4-61.

37)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제8.03조 (a) A board of directors must consist one or more individuals[...] (후략)(이사회는 1인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개인(individual)을 ‘자연인(natural person)’으로 정의한다(제1.40조(13)).

38) Aktiengesetz 제76조 제3항 제1문: Mitglied des Vorstands kann nur eine natürliche, unbeschränkt geschäftsfähige Person sein(경영이사는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 제100조 제1항 제1문: Mitglied des Aufsichtsrats kann nur eine natürliche, unbeschränkt geschäftsfähige Person sein(감독이사는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 독일 유한회사법(GmbHG) 제6조 제2항 제1문.

39) 일본 회사법 제331조 제1항: 다음의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법인 (후략).

40) 일본 회사법은 명시적으로 법인 이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입법론적으로 폐쇄형 주식회사에서 법인 이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 江頭憲治郎,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7. 11(제7판), 385면. 합병회사에서 총회에서 법인의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 자격을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에게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 자신이 이사가 되어서 종업원을 이사회에 파견하는 것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다는 점, 持分會社の 무한책임사원 자격에 법인을 허용한다는 점(종래 일본도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은 철폐되었다. 물론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권한을 갖는 경우 자연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자=직무집행자로서 선임하고, 이 자의 성명 등을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사법 제598조 제1항. 이 때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사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법 제598조 제2항)(상세는 江頭憲治郎, 상계서, 31-32면), 법인이 회계감사인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회사법 제337조 제1항)을 감안할 때 법인 이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1) 송옥렬, 전계서, 990면; 이철송, 전계서, 646면.

42) 이철송, 전계서, 646면.

연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거나<sup>43)</sup> 이사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민·형사 책임은 이사가 자연인인 경우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sup>44)</sup>을 논거로 한다.

이사회에서 이사의 역할과 그 한계를 감안하면 이사회에 반드시 자연인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sup>45)</sup>이 있다. 개별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 정보의 불균형,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의 내부자와 비교할 때 회사에 고유한(firm-specific) 지식, 기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사가 이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사회에 실패라고 하면서,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sup>46)</sup>

또한 투자회사에서 법인 이사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인 이사만 강제하는 현행법이 공리인지는 의문이 있다. 자연인 이사가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조합 등 단체에 의해 회사가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sup>47)48)</sup>

자연인 이사만 허용하는 입법에서 자연인이란 인간(human)을 의미하므로 자연인 이사만 허용하는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에서 AI같은 프로그램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게 될 것이다.

### 2.1.2 법인 이사 vs. AI 이사

법인 이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는 AI 이사의 허용 논의에도 타당한가? 우선 이사가 업무집행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이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거는 AI 이사를 부정하는 논거로는 박약하다.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안전에 관하여 既학습한 경험과 데이터 분석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전통적으로 인간에 의해 완수되는 행위들을 인간처럼(humanly)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오스본(Michael Osborne) 교수 등이 702개의 직업에 대해 컴퓨터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확률을 연구한 논문<sup>49)</sup>에 따르면, 47%의 직업이 20년 후에 자동화에 의해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었다.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은 콜센터나 은행원 등 상담직, 택시기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약사, 펀드매니저 등인데, 이들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인간보다 정교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량화된 일을 하는 직업군이라 할 수 있다.

43) 田中亘, 「会社法」, 東京大学出版会, 2016, 205면.

4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342면; 河本一郎, 「現代会社法」, 商事法務研究会, 2004(신정 제9판), 443면.

45) Bainbridge/Henderson, 전계논문, p.1072.

46) Bainbridge/Henderson, 전계논문, p.1099. 이 입장은 회사가 법률서비스를 로펌에, 회계업무를 회계법인에 아웃소싱하는 것처럼 이사 업무를 제공하는 외부의 자에게 맡기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board service provider(BSP)' 라 한다.

47) 미국에서 모든 사업체가 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Stephen M. Bainbridge/M. Todd Henderson, Boards-R-Us: Reconceptualizing Corporate Boards, 66 Stanford L. Rev. 1051, 1101-1102 (2014).

48) 독일에서는 도산관재인에 법인 이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다. Markus Gehrlein, Leitung einer juristischen Person durch juristische Person?, NZG 2016, 56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을 도산관재인 결격사유로 한 것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BVerfGE 141, 121 (2006).

49)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September 17, 2013. 각각 옥스퍼드대 경제학자, 머신러닝 교수인 저자들은 702개 직업군을 선정하여 향후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직업의 순위를 매겼다.

이에 대해 경영자군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직무는 추론을 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다른 이사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법인에게 이사 또는 임원로서의 지위를 허용하고 또한 AI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AI의 이사/임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AI에 대한 법인격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는 특히 자율로봇에 대한 책임법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럽연합(EU)의회는 로봇에 관한 민사법 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결의하였는데 법인격과 관련된 사항을 적고 있다. 가장 진화된 자율 로봇에 대해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전자 인간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책임주체를 허용하고, 또한 로봇이 자율적 결정을 하거나 (인간과) 독립적으로 제3당사자와 소통하는 경우에 ‘전자 인격(electronic personality)’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sup>50)</sup>

AI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특질을 갖춘 AI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이 이러한 AI를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AI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법인도 인간의 특질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법적 필요성에 의해 인공적으로(artificially) 만들어낸 인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I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정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법인 이외에 따로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AI에 법인격을 인정해도 현실적으로 AI의 의무위반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난문이다.<sup>51)</sup> 법인 이사의 경우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에서의 책임귀속을 통해서 의무위반 및 책임인정, 손해배상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AI 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법도 없고, AI 자체의 손해배상을 위해서 AI가 일정한 책임재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도 너무 비현실적이다.

## 2.2 AI 이사의 필요성 여부

AI 이사를 현실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는가? 현행법상 AI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AI를 이사로 인정할 필요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AI에 의한 의사결정을 거치는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의 장단점은 이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sup>52)</sup>

50)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51)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인공지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머신러닝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도 답하기 어렵다. 원래의 AI 프로그램의 제조에 과실이 있는자인가? 아니면 머신러닝을 직접 가르친 대표이사(업무집행이사)나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감독을 잘못된 대표이사인가? 아니면 해커가 인공지능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IT관리자인가?

52) 장점으로는 AI 활용을 위한 인력 채용에 의한 일자리 창출, 단점으로는 AI가 인간을 대체함에 따른 일자리 상실, 해킹과 사이버범죄의 문제, 알고리즘 자체의 구조적 문제, 인간에 대한 위협을 들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 전계 보고서, p.21.

여기서는 AI에 의한 판단과정과 이사 지위 취득의 문제에 국한하여 서술한다.

### 2.2.1 AI 이사의 장점

AI는 의사결정의 기동성과 합리성,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는 시스템에 입력된 과거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복잡한 미래의 의사결정 절차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구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AI는 이사의 경영을 도와줄 수 있고 이사회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AI에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AI는 편견이 없고, 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사회 의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리는 경우 AI는 중립적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양분된 경우에 사외이사로서 AI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자연인 사외이사보다 양측 모두를 보다 잘 설득하여 이사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인간 이사보다 전문성과 독립성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 AI가 습득하고 처리하는 정보의 양, 속도, 계량적 판단의 정확성은 인간 이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 및 이사회 안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AI자신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는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 반대하여 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

이처럼 AI가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독립성과 전문성 덕목을 갖추었다는 점은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AI가 의무에 반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하며, 인간 이사와는 달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함으로써-충실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2 AI 이사의 단점

앞에서 살펴본 AI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AI가 훈련한 기존 훈련데이터가 편향되거나 오류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실제로 인간의 뇌 신경작용의 사고회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변수’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기존 자료를 관찰·분석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고 이를 새로운 사건에 응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 때문에 인간이 투입한 기존 훈련 데이터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면<sup>53)</sup> AI의 판단이 영향을 받게 된다.

AI는 인간 이사와는 달리 과감한 경영판단을 하는 기업가적 판단을 하는 것이 취약할 수 있다.<sup>54)</sup>

53) 이처럼 훈련데이터에 섞여 있는 부정확한 정보나 오류를 노이즈(noise)라고 한다. Michael L. Rich, Machine Learning, Automated Suspicion Algorithms, and the Fourth Amendment, 164 U. Pa. L. Rev. 871, 884 (2016).

54) 김화진, “인공지능 사외이사,” 뉴스1, 2019. 2. 6. 인터넷판. <http://news1.kr/articles/?3557202>.

AI에게 입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책임귀속의 전제가 되는 의무의 구체화는 복잡한 문제이다.

### 2.2.3 AI의 이사 지위 허용 여부

AI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AI를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인격 향유까지 부정해야 할 논리필연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제적·사회적 필요성과 컴퓨터가 자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법인격 부여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sup>55)</sup> AI의 판단을 인간의 행위로 환원해서 판단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점, 거래 편의를 위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입장에서는 AI에 법인격을 인정하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56)</sup>

계약체결 등 거래를 위해서 AI 자체가 대리인의 지위를 갖고 계약체결을 하고 그 법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면 본인의 행위로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I를 이사로 허용하는 입법론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사회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사의 지위를 허용하는 입법을 할지는데 논구할 필요가 있다. AI에게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설령 의무의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AI에게 부과해 보아야 AI 자체가 책임재산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AI에 대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하여 책임을 허용한다고 해도 AI의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회사 또는 이사의 의무위반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AI를 이사로서 인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 AI를 활용한 이사의 의무위반의 문제로 다루면 된다.

결론적으로 AI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sup>57)</sup> AI의 기능이 증강되면 이사들은 쉽게 수집된 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인간 이사만의 권한이다. 인간 이사가 AI 기술이 회사의 운영과 경영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AI의 발전과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에 주시하면 된다.

## 3.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의 AI에 대한 위임 가부

### 3.1 일반론: 이사회 권한의 위임 가부

55) 한국인공지능학회, 전게서, 제2편 제3장 인공지능과 민사법, 121면(김영두·고세일 집필). 물론 모든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어느 경우에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56) 한국인공지능학회, 전게서, 121면(김영두·고세일 집필).

57) 이에 대해 머지 않은 장래에 기술발전과 국가간 규제 경쟁에 따라 법적 의미에서 ‘진정한’ 로봇 이사(true legal director)가 등장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Barfield/Pagallo, 전게서, Ch.25, Robots in the boardroom, p.666.

AI 자체가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의사결정권, 이사의 의결권을 AI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사회 의사결정권은 이사회 결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이사회 권한 위임이 허용되는지의 문제이다.

상법상 이사회 권한의 위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임이 허용됨은 의문이 없다. 이사회 의사결정권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대표이사의 선정(상법 제389조 제1항) 등 상법에 명문으로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법에 유보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학설이 갈린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1조의 해석상 이사회 권한을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압도적 다수설은 확장설에 의해 명문규정은 없지만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과 권한배분의 자율성을 논거로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있고, 성질상 주주총회 소집권은 위임할 수 없다고 본다.<sup>58)</sup> 이에 대해 기관간 권한분배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설이 유력하다.<sup>59)</sup>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이나 개별 이사, 임원에 대한 위임의 허용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sup>60)</sup> 이 입장에서는 개별 이사에 대한 위임도 대표이사가 위임받은 것을 다시 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sup>61)</sup> 회사 경영의 핵심에 속하는 이사(회)의 권한(및 의무)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항상 이사회가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사회가 경영의 핵심적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사회 회사경영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은 델라웨어 회사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가 확인하고 있다.<sup>62)</sup>

한편 이사 권한의 위임이 가부도 문제되는데, 이사의 권한이란 -대표이사나 업무집행이사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말하므로 의결권 대리행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사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sup>63)</sup>이다.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토론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sup>64)</sup>

58) 상법상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권(제335조 제1항 단서)은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본다. 주주총회가 주식양도에 대해 승인하도록 하면 주식양도가 보다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59) 이철송, 전게서, 491면.

60) 권기범, 전게서, 807면.

61) 권기범, 전게서, 805-806면.

62) *In re Bally's Grand Derivative Litigation*, 1997 WL 305803 (Del. Ch. 1997). Bally's Grand의 이사회는 회사의 유일한 실질적 사업인 카지노 호텔의 경영을 관계회사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의하면 경영을 맡은 관계회사는 카지노 운영의 전권과 책임이 있었으며, 단 Grand사의 이사회는 Grand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권이 있었다. 델라웨어주 형평법원(당시 Vice-Chancellor였고 현재 델라웨어주 대법관 Jacobs)은 이 계약에 의할 때 Grand사의 이사회가 사실상 계약 해지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 이사의 권한위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취지로 *Grimes v. Donald*, 673 A.2d 1207, 1214 (Del. 1996)(이사회는 회사의 정책과 사업운영의 궁극적 자유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판시).

6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64) 송옥렬, 전게서, 1008면; 이철송, 전게서, 692면.

### 3.2 이사회 권한, 이사의 의결권의 AI에 대한 위임 거부

이사회의 의사결정권, 이사의 의결권 행사의 위임은 모두 수임자가 자연인임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아닌 AI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는가? 이 문제는 거의 논의된 적이 없지만 두 가지 입장을 상정해볼 수 있다. 기계는 사람(자연인)이 아니므로 의사결정권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의사결정권은 인간 이사에게 보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의사결정권 위임의 허용 취지라는 점에서 기계에 대한 위임도 허용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권 위임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사항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AI에 대한 위임 논의에도 타당하다. 물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적어도 궁극적 의사결정권은 이사회가 보유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에 관하여 AI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고 이사회가 결정하였다고 해도 적어도 AI의 판단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개별 이사의 의무이다.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지시, 감독, 통제하는 것은 국가를 막론하고 이사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이다.<sup>65)</sup>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모호하지만, 이사회에서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맡길 지 여부에 관해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요컨대 이사회 의사결정권, 즉 이사회 결의에 대체하여 AI의 의사결정권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 4. AI의 활용 여부와 이사의 의무, 경영판단원칙

### 4.1 AI 활용에서의 이사의 의무

이사회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상정가능한 논점은 이사가 AI를 활용하는 경우 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위반 여부와 경영판단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이사회 의사결정권은 AI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입장에서도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AI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AI의 활용은 허용될 것이다. 이사회 판단의 전제, 자료를 제공하게 될 AI의 활용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는 AI의 활용 여부, 어떠한 작업을 맡길 것인지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펴야 하고,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AI의 판단을 인간 이사 또는 이사회로부터 그 업무를 부과받은 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즉 이사회는 AI의 활용 여부에 있어서 로봇, 알고리즘, AI의 선택 여부 및 선택시 그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sup>66)</sup>

65) Holger Fleischer, *Vorstandsverantwortlichkeit und Fehlverhalten von Unternehmensangehörigen*, AG 2003, 291, 292 ff.

66) Barfield/Pagallo, 전제서, Ch.25, p.660.

이러한 작업은 이사들이 적어도 AI의 작동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사가 AI의 작동에 관하여 무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의무위반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 오히려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사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인간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를 활용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sup>67)</sup>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sup>68)</sup>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유사한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sup>69)</sup>를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sup>70)</sup> 및 재해 등 예방을 위한 하기 위한 체계,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sup>71)</sup>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한 금융투자업을 영위 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적투자조언장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AI를 활용하는 이사에게도 적용된다. 이사는 중요한 오류를 수반하는 AI는 활용하면 아니 되고, AI의 작동체계가 안정적이고 AI가 도출한 조언에 중요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AI의 활용 또는 불활용과 이사의 의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문제, AI를 통한 감시의무와 내부통제구축의무 문제를 상론한다.

## 4.2 AI의 활용과 이사의 의무, 경영판단원칙

이사회에서 AI의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제기된다.<sup>72)</sup> 일반적으로 선관주의의무의 수준은 그 지위와 상황에 있는 자에게 통상 기대되는 정도에 의하는데, 주의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up>73)</sup> 주의의무의 수준과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개

67)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되지만(제98조 제3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단서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의2호).

68) 외국법과 비교할 때(예를 들어 독일 증권거래법 제33조), 이 요건이 충분한지는 의문이 있으나 이 글의 주된 쟁점이 아니므로 후행연구로 남겨둔다.

6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자정보처리장치이다. 가.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할 것,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71)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제2호, <별표29>.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인력을 요구한다.

72) Lane, 앞의 책, p.4-61; 松村英寿, 전계논문, 30면.

73) 최문희(집필), 노혁준 외 5인, 「신체계회사법」, 박영사, 2020, 제8판, 197면.

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무리 주의의무의 내용을 정밀하게 규정하더라도 실제 사례에서 그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간단하지 않다. 더구나 여러 가지 조건과 경영상 의사결정의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단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상 결정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추궁하면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회사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사의 경영상 결정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의 결과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의사결정 당시에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이사에게 주의의무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다.

경영판단원칙에 관해서 상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sup>74)</sup> 판례는 경영판단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였다면” (밀줄 필자)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거나,<sup>75)</sup> 이사가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신의성실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그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밀줄 필자)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sup>76)</sup>이라고 본다.

AI와 관련된 이사의 경영판단은 첫째, AI를 활용하지 않고 경영판단을 하는 경우, 둘째, AI의 판단 또는 조언에 의거하여 경영판단을 하는 경우, 셋째, AI의 판단 또는 조언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AI의 조언내용과 다른 경영판단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sup>77)</sup>

#### 4.2.1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경영판단법칙

AI 활용에 드는 비용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AI를 불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은 이사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 이사회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는데, 나아가 이사가 AI를 활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사는 정보를 숙지한 상태(on an informed-basis)에서 행위하여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I는 빅데이터를 작은 정보로 해석함으로써 예측분석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 능력에서 인간보다 월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사의 정보숙지의무는 AI가 제공한 예측분석결과를 입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사의 정보숙지의무가 “존재하는 입수가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수집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78)</sup> 비용문제 등의 사정으로 AI를 활용할 여건이 안되는 회사도 있을

74) 독일 주식법 제93조 제1항 제2문은 “이사가 경영판단시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이 아니다.”라는 경영판단원칙을 명시한다.

7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

7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새마을금고 판결).

77) 이 착안점은 松村英寿, 전계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78) Möslein, 전계논문, S.209.

수 있다. 이사가 정보수집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정보수집에는 비용이 들고, 정보수집비용과 정보활용에 따르는 수익을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경영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sup>79)</sup> 경영판단원칙이 명시된 독일 주식법(제93조 제1항 제2문)에서 “적절한 정보(angemessene Information)” 수집에 관한 해석론도 “모든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적지 않다.<sup>80)</sup>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관하여 주의 깊게 조사하여야 하는데, ...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또는 법적인 모든 입수가 가능한 정보(alles verfügbaren Informationsquellen tatsächlicher und rechtlicher Art)를 수집하여 판단 당시 존재하는 선택지의 장단점을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sup>81)</sup> 이에 대해서는 법문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사의 경영판단이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AI의 활용과 불활용시를 비교하여 활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불활용하는 경우가 활용하는 경우보다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다. AI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sup>82)</sup>

나아가 범용 AI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AI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사가 불합리하게 행동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AI의 지출비용이 크다는 점 외에도 설사 구입했다고 해도 이를 개별 회사의 수요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들고, 인간이 하는 작업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83)</sup>

장래 범용 AI가 널리 보급된 경우 당연히 AI를 불활용하는 경우에는 AI의 활용에 관한 이사의 행위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기준에 위반하여 AI를 불활용하면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AI와 관련된 의무의 구체화가 어렵기 때문에 AI에 대해 이사회가 일정 업무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비용 등의 이유로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인간 이사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인간 이사가 판단하는 경우 인간 이사에게 AI와 같은 수준의 정보수집·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고 옳지 않다. 막대한 정보를 분석·학습한 AI와 인간의 정보수집·분석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AI를 활용하였더라면 더 좋은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AI의 불활용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AI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사가 의사결정을 위해서 ‘인간 수준

79) 이사가 사업상 결정 이전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자체가 경영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 In re RJR Nabisco, Inc. Shareholder Litigation, WL 7036 (1989).

80) Möslein, 전계논문, S.209. 같은 입장: Fleischer, Aktuelle Entwicklungen der Managerhaftung, NJW 2009, 2337, 2339 외.

81) BGH, NJW 2008, 3361.

82) 거꾸로 이사의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한 경우 그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경우에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83) Barfield/Pagallo, 전게서, Ch.25, p.661.

에서’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면 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2.2 AI의 조언에 따라 판단한 경우

비용의 걸림돌이 없는 경우 AI를 활용하는 것이 회사의 최대이익이 된다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sup>84)</sup> 이 경우 AI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AI의 성능은 AI가 학습한 정보량과 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AI의 조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AI가 학습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이면 좋은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AI가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는 제약이 있으며, 그 데이터 양은 이사가 맡은 업무의 난이도와 데이터의 질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반드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AI에 입력된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출력 데이터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알파고’ 보다 기력이 우월하다고 평가받은, NHN이 개발한 세계 3위 AI 바둑 ‘한돌’이 이세돌 프로 九단과의 대국에서 1패를 한 이유는 초보도 두지 않는 어이없는 악수 탓이었다고 한다. ‘한돌’은 바둑의 기본 규칙인 축(逐)<sup>85)</sup>과 장문(藏門)<sup>86)</sup>에 의해 자신의 요석(要石)<sup>87)</sup>이 잡히는 수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sup>88)</sup> 일각에서는 ‘한돌’이 축과 장문도 모르는 것 아니냐 라면서 ‘한돌’의 기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른 예로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실험용 AI 채팅로봇 ‘테이(Tay)’가 인종 차별, 히틀러 찬양 같은 댓글을 달아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다.<sup>89)</sup>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와의 대화를 위해 제작된 테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화 패턴을 학습하고 말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테이에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주입한 탓으로 보았다.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는 것(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이처럼 AI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AI의 블랙박스(black box)의 문제도 있다. AI는 단순한 기호처리가 아니라 인공신경망 모형 기반의 심층학습(deep learning;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구조상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sup>90)</sup> 딥러닝에서는 인간이 적은 수의 코드만 설계하고 최소한의 제한규칙만 주어진다. 학습(learning)을 통해 만들어지는 심층

84) Lane, 전계서, p.4-61

85) 단수를 쳐서 돌을 잡는 것을 말한다.

86) 상대의 돌을 활로를 직접 막지 않고 빗장을 걸듯 포위하여 잡는 방법이다.

87) 바둑에서 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돌.

88) [재계톡톡] 초보도 안 하는 실수를...한돌 ‘버그’에 체면 구긴 NHN, 매경 인터넷판, 2019. 12. 23. 기사.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12/1076245>.

89) 테이는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날리는 트윗과 멘션을 학습하여 점차 사람과 유사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트위터에서 사용자들이 테이에게 부적절한 말과 표현을 지속적으로 기입하자, 테이도 인종차별 발언을 시작하거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결국 테이는 폐쇄되었다. Garbage in, garbage out, 전자신문 인터넷판 2016. 6. 8. 기사. <https://www.etnews.com/20160608000378>.

90)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2, 제1편 제3장, 인공지능과 윤리, 59-60면(김효은 집필).

신경망의 층과 연결망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결과이지 인간이 모두 입력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딥러닝 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 출력결과(output)에 대해서 딥러닝 설계자도 어떻게 그러한 최종 판단이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 최종 출력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AI의 학습 과정 내부를 ‘블랙박스(black box)’ 라고 한다. 이 때문에 AI의 조언에 의거하여 경영 판단을 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는 AI의 판단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AI의 조언에 의거하여 경영판단을 하는 경우 이사는 AI를 활용한 의사결정과정<sup>91)</sup>이 회사를 위한 최대이익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AI 기술에 관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다.

AI가 어떠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학습한 것인지에 따라서 AI의 성능이 달라지므로 AI에 입력된 정보가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AI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마다 주입하는 정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AI에 주입된 정보가 적기 때문에 과거의 판단 사례가 적은 회사는, 동일한 AI를 이용한 타사가 과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타사의 사례는 경영상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하기 쉽지 않고, 설령 수집하더라도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옳았던 판단이 자사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AI의 조언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사에서 계속해서 AI에게 학습시켜서 사례를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이사의 경영판단의 전제 사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AI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판례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쉽다.

판례는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sup>91)</sup>인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판단”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비상장회사 주식 매각방법이나 거래가액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였는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본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을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의 한 가지로 드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적절하게 학습한 AI를 이용하여 그 조언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적절하게 학습한 AI의 조언에 따라 판단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경영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 4.2.3 AI의 조언과 다른 판단을 한 경우

AI를 활용하여 조언을 받았으나 중국적으로 AI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는가? 복잡한 수치에 관한 계산능력이 인간보다도 우월한 AI가 경제성 합리성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사는 회사의 규모·종류, 업무의 내용 등 회사를 둘러싼 복잡하고 유동적인 여러 상황 하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

9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함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경영상 판단을 한다.<sup>92)</sup>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 이외의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이사가 판단하였다면 그것이 AI의 조언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AI의 성능에 관한 기술이 점점 진보하여 장래에 일반적으로 AI가 ‘강한 인공지능’으로서 이용되어 대부분의 기업이 AI의 조언을 토대로 경영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사가 AI의 조언과 다른 경영판단을 하였다면 왜 그런 판단을 하였는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만 이사는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된다.<sup>93)</sup>

## 4.3 AI와 감시의무

### 4.3.1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해서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이사는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선관주의의무에는 다른 이사의 직무수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감시의무가 포함된다.<sup>94)</sup>

감시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는 회사의 규모,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이사의 지위,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에 따라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감시의무가 발동되고, 무엇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판례는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법리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1)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sup>95)</sup> (2) “이사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96)</sup>

판례에 의할 때에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가 어떠한 경우에 감시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이 감시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회사법(제348조 제3항 제4호, 제362조 제4항 제6호, 제416조 제1항 ホ)에 따라 회사의 이사 또는 지명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기타 주식회사의 업무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회사법시행규칙(제98조, 제100조,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체제정비(소위 ‘내부통제시스템’)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이사의 직

9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8128 판결.

93) 松村英寿, 전계논문, 33면.

94) 이 절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 서술은 최문희(집필), 노혁준 외, 전계서, 제4장 I. 3.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부분을 요약하고 내용을 보충한 것임을 밝혀둔다.

9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9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대우 분식회계).

무집행에 관한 정보보존 및 관리체제, 손실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란 회사의 자산보호,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진, 경영방침 및 법규 준수를 위해서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이사도 감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상법에는 일본 회사법과 같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산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선임의무(상법 제542조의13, 상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가 있다. 비슷한 제도로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회계분야에 관한 내부회계관리(외부감사법 제2조의2, 제2조의3),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그 집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선임 강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판례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 (밑줄 필자)라고 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 관해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밑줄 필자)를 참작할 수 있다<sup>97)</sup>고 한다.

#### 4.3.2 AI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법령과 판례에서 말하는 위험관리체제나 내부통제시스템은 AI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AI를 활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AI의 활용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했다는 징표가 될 수 있다. 거꾸로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감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에 관해서도 이사가 AI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AI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은 회사의 목적과 사업내용, 회사의 규모, 경영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AI의 활용 여부에 관해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98)</sup>

#### 4.4 AI와 이사후보의 적격성, 이사 보수의 적정성

9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98) 松村英寿, 전제논문, 35면.

주지하듯이 경영의 영역 중 가장 보수적인 인재와 조직관리에 AI가 이용되어 오고 있는데,<sup>99)</sup>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이행하는 데도 AI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는 인사평가 시에 양질의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채용, 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관리, 해고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마존,<sup>100)</sup> 로레알,<sup>101)</sup> 롯데,<sup>102)</sup> 오리온그룹<sup>103)</sup> 등 ‘AI 인사담당자’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리더와 최고인사담당자 7300명을 대상으로 머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 36%가 채용 과정에서 어떤 인재가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거나 더 오래 회사에 남아 일할 확률이 높은지 인공지능으로 선별하고 있었다. 미국·일본·중국에서는 인공지능 채용 플랫폼이 이미 보편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졌다. 채용비리의 비난을 피하고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내부 직원을 특정 단계에서 배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성과관리, 역량 개발, 보상, 조직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AI가 적절한 인재를 분석하여 이사회 후보자의 면면에 관하여 분석하여 조언할 수도 있다.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에 이사회 후보자에 관해서 약력, 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이외에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고(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sup>104)</sup>에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2.3),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24조의2)<sup>105)</sup>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별지 제8호 서식)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공시로 간주되어(동 규정 제29조) 제재가 가해진다. 여기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책임’이 있는 자를 판단하는 데 AI의 분석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이사의 보수 결정에도 AI의 분석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경력과 업적을 바탕으로 이사를 채용한 후에도 AI를 이사회 현장에 배치시켜서 이사회에서의 논의상황을 지켜보게 하면 AI가 실제로 이사회에서 이사의 발언의 질과 내용 등 기여도를 분석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데 조언을 할 수 있다. 상장회사나 금융회사에서 보수위원회,

99) 채용·관리·해고까지 AI직원이 ‘척척’...아마존·로레알 등 속속 도입, 한경 인터넷판 2019. 5. 13,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1375341>.

100) 아마존은 AI를 통해 직원 감시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 결과 직원을 해고했다. 이 시스템은 관리자의 특별한 명령 없이도 물류센터 직원의 업무 이탈 시간을 측정하여 지나치게 오랫동안 업무 현장을 떠나 있는 직원을 파악하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고, 이 경고가 누적되면 해고 가능성이 커진다.

101) 입사지원자의 1차 기본요건 검증 및 2차 인터뷰 진행.

102) 입사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검증.

103) 입사지원자에 대한 AI 면접 실시.

104)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2016. 7. 26.

10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4조의2, 규정 제1616호, 2018. 12. 19. 신설, 2019. 1. 1. 시행.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성과보상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주식가격 등 회사의 업적에 연동되는 보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성과연동주식(stock grant)처럼 사외이사가 파악하기 힘든 보수 인센티브 체계에 관하여 회사에 적절한 보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sup>106)</sup>

## IV. AI와 주주,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집단적으로 AI를 활용할 필요성은 이사회외의 경우보다 적겠지만, AI의 활용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주주총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주와 회사 경영진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AI를 활용하여 주주총회 현장에서 효율적 의사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 1. 주주의 권리행사와 AI

AI의 활용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AI의 기술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둘 수 있다. 만일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AI에 무지하거나 AI를 활용하는 데 주저한다는 인상을 주는 회사는 주주행동주의자(shareholder activist)들이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로봇, AI를 참여시킬 수 있다.

한편 주주는 AI를 통해서 회사에 관하여 공시정보와 인터넷상의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고, 회사의 재무상태, 사업내용에 관한 데이터를 습득하여 유희자산 정도, 채산성 낮은 사업을 판별할 수도 있다.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현 경영진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법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AI를 통해 회사의 다른 주주에 관한 정보(성향 등)를 수집하여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주주에 대해 위임장 권유를 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하여 회사, 다른 주주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면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제5호)는 위임장 권유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 위임장 참고서류의 분석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돕게 된다.

106) 松村英寿, 전계논문, 33면.

## 2.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와 AI

### 2.1 전자투표와 AI

전자투표(상법 제368조의4)는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및 개최지 분산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2020년 1월 29일에 전자투표의 철회·변경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삭제),<sup>107)</sup> 올해부터 시행되므로 주주총회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전자투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K-evote’  라는 전자투표시스템<sup>108)</sup>을 운영 중이고,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채택하기로 밝힌<sup>109)</sup> 데 이어서 소수주주 측에서 전자투표를 요구<sup>110)</sup>하는 등 상장회사에 전자투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나 전자투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 또는 개선하여 전자투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 신청을 했다가 전자투표 시 기술적 오류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못하거나 투표결과의 집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sup>111)</sup> 주주총회 결의의 결의방법상 하자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 또는 부존재의 소(상법 제376조, 제380조)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2)</sup> 여기서 기술적 오류, 집계의 오류를 막기 위하여 AI를 활용할 수 있다.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를 돕기 위해서 전자투표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챗봇(chat-bot)상담 시스템 도입도 고려될 수 있다. 이 때 챗봇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술상 문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형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주주의 질문과 답변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챗봇의 답변상 오류가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마찬가지로 결의방법상 하자가 되어 주주총회 결의취소 또는 부존재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주체와 발행회사의 이사의 책임분배와 귀속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2.2 전자주주총회와 AI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예처럼 적어도 주주

107) 대통령령 2020. 1. 29. 개정, 2020. 1. 29. 시행. 종래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의 철회·변경이 금지되는 것에 관해서 제기된 많은 비판(송옥렬, 전계서, 943면 외)을 수용하여 동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108)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evote.ksd.or.kr>. 발행회사와 주주 양자가 PC,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다.

109) “삼성전자 올 주총부터 ‘모바일·PC 투표’ 도입,” 매일경제 2020. 1. 30. A1면 1단.

110) “KCGI, 한진·한진칼에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요구,” 연합뉴스 2020.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162800008?input=1195>

111) 나아가 전자투표의 철회·변경이 허용되는데 철회·변경 투표 내역의 집계와 관리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11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하면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10일전부터 전일까지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실시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 전일은 오후 5시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총회 현장과 병행하는 전자주주총회(소위 ‘현장 병행형’)의 개최를 허용하는 입법도 예상할 수 있다.<sup>113)</sup> 이를 위해서 주주총회 소집지에 관한 상법 제364조에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주주총회는 세계 각국에 소재하는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므로 필연적으로 쌍방향 원격통신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물리적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가 할 수 있는 질문권 등 권리행사를 온라인 상의 무수한 주주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AI의 활용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돕고 기술의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전자투표도 하지 않고, 주주총회 현장에도 가지 않은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 3. 주주총회장에서의 AI의 활용

주주총회장에서 주주의 출입을 위해서 주주의 확인,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절차 때문에 주주총회장 입장을 위해 주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주식분할 후 처음 개최한 2019년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1,0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입장을 위한 대기만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주주의 불만이 쏟아진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주주 확인을 위해서 AI를 활용하면 AI에 의해 생체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절차가 훨씬 개선될 수 있다.<sup>114)</sup> 이를 위해서는 미리 주주 본인의 안면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비용 절감과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주총회 개최 후에도 AI를 활용하여 주주의 출석 및 퇴장을 관리하고 정확한 투표집계를 할 수 있다. 현재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다수의 회사가 여전히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주주의 출입을 확인한다고 한다. 주주총회의 안전이 다수이거나 총회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한번 회사로부터 주주확인을 거친 주주가 총회장을 이탈하여 총회장에 출석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탈한 주주를 빠짐 없이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 이 때문에 안전별로 주주의 투표결과를 집계해야 하는데 표계산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결의방법상 하자사유가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sup>115)</sup> 또는 부존재의 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하여 총회장을 이탈하는 주주를 인식하고

113) 이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등

114) 주주총회장에서 이용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이미 NEC의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 공연장에서 다수의 입장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시간을 절약한 사례가 있다. NEC의 안면인식 기술은 눈, 코, 입의 생김새, 특징을 추출하여 사진과 대조하는데, 1초에 620만명 이상의 얼굴 사진과 대조할 수 있다고 한다. NEC, 顔認証で「ももクロ」チケット転売防止, Nikkei 인터넷판, 2014. 12. 10,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80664930Y4A201C1H56A00>. 이미 공항 출입국관리, 회사의 출퇴근 관리, 방법에 널리 쓰이고 있다.

115) 이러한 주주의 표가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의취소의 소는 재량기각(상법 제379조)될 수도 있지만, 제소 자체가 회사에 부담이 된다.

출입을 관리하면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V. AI와 無人자율경영 주식회사?

AI 기술발전의 제3단계인 자율적 AI(autonomous AI) 단계에서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인간보다 판단능력이 뛰어나다면 과연 인간 이사나 인간 종업원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AI만으로 구성된 회사도 상정해볼 수 있다. 필자처럼 아직은 AI에 이사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는 실현할 수 없을 것이나, 머지 않아 누구든지 자율 컴퓨터 알고리즘을 회사에 투입하고 알고리즘에 법 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sup>116)</sup>

이러한 회사는 생산성 증대, 수익 증대의 장점이 있다. AI가 경영을 맡는 경우 인간 이사가 있는 경우 인간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사익추구행위, 경영권 승계의 문제가 없게 되고, 회사 경영을 위한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sup>117)</sup>

이처럼 완전히 자동화된 회사(Selbstfahrende Kapitalgesellschaften, self-driving corporations)의 도래를 논의하는 학자도 있다.<sup>118)</sup> 모든 회사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완전 자동화된 회사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위험분산을 위해서 설립한 자회사, 계열회사에 인간 이사나 직원을 두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이러한 알고리즘 회사는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sup>119)</sup> 처음에는 이러한 알고리즘 회사가 변성할 수 있으나, 범죠평자, 테러리스트 기타 반사회적 활동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알고리즘 회사는 그 속성을 숨기고 상거래를 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반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회사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AI가 예측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이 복수의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개별 회사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을 이해하고, 각각의 의사결정으로 부터 얻는 편익과 잠재적 불이익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20)</sup> AI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기는 하지만 미래에 관해서 예측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고, 창조성과 혁신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한다. 이미 기계가 팝음악을 작곡하고, 위대한 화가의 그림을 모사하며 영화 제작에 창조적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장래에 창조적 또는 혁신적 기계가 존재할지에 관해서는 AI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

116) Shawn Bayern, The Implications of Modern Business Entity Law for the Regulation of Autonomous Systems, 19 Stan. Tech. L. Rev. 93, 104 (2015)

117) Armour/Eidenmüller, 전계논문, ?면

118) Armour/Eidenmüller, 전계논문, ?면

119) Lynn M. Lopucki, Algorithmic Entities, 95 Wash. U. L. R. 887, 951 (2018).

120) Agrawal/Gans/Godfarb, p.15.

고 있다.<sup>121)</sup>

회사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인간을 AI로 대체하는 것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회사법 관점에서 AI의 활용에 따라 대리비용이 감소될 수 있지만, 전적으로 AI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또 다른 비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AI의 고안, 활용, 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AI로만 운영되는 무인자율경영회사에서 AI의 기술상 오류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인간 이사가 없기 때문에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회사도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재산이 없다. 100% AI자회사의 모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모회사는 주주로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격부인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무인자율경영회사의 인정여부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회사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인자율경영회사는 인간 이사를 상정한 회사법상 자기거래, 기회유용, 의무위반 등 규정이 필요 없거나 수정될 것을 예정한다. 이사에 대해 성과에 기반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무인자율경영회사 자체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행 회사법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AI의 법인격 인정 여부부터, 행위와 의사능력이 있는 인간 이사를 전제로 하는 이사회 등 회사지배구조와 기관, 회사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정의 획기적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 VI. 맺음말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회사법에 영향을 미쳐왔다. 전자투표, 전자증권, 전자위임장 등 상법 등에 ‘전자’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AI 기술은 미증유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고, 회사법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AI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의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고 또한 활용될 예정이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없는 회사, AI 이사가 허용되는 날이 오면, 인간을 상정하고 인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우리 회사법은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회사법의 변혁이 일어난다. AI에 대해서 법학에서도 학제적으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법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AI의 활용이 회사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AI와 회사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야기되는 논점을 개관하였다. AI가 제기하는 도전을 회사법에서도 받아들여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아직 시론에 불과한 설익은 논의이지만, 향후의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121) IBM, What's next for AI: The Quest for AI Creativity,  
<https://www.ibm.com/watson/advantage-reports/future-of-artificial-intelligence/ai-creativity.html>.



(사)한국상사법학회 2019 동계학술대회 제2세션

# 기업활동과 상거래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발 표 자	최경진 (가천대)
사 회 자	정완용 (경희대)
토 론 자	윤영신 (중앙대)
	이나래 (변호사)

# 기업 활동과 상거래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최 경 진\*\*

## I. 머리말 - 논의의 전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진정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경제적 적용 영역이 높아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알파고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증폭시킨 이후 법률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로 요약된다.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법정정책 개선방안 도출,<sup>1)</sup>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적 쟁점,<sup>2)</sup>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sup>3)</sup>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sup>4)</sup>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sup>5)</sup>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sup>6)</sup>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법정정책 동향 소개,<sup>7)</sup> 인공지능과 자본시장법제 정비방향 검토,<sup>8)</sup> 인공지능과 차별 문제,<sup>9)</sup> 인공지능과 계약법 및 의

\* 이 글은 2020.2.13. 개최되는 한국상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시론적 논의로서 향후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에는 대폭 수정 혹은 보완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 1) 양희태 외 10인,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 국가 인공지능 R&D 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 2019.12.
- 2) 김승래·이창성,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 특허권과 저작권보호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2018.9.), 485-531면; 김용주, “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2018.6.), 65-99면; 김현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 : '방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2018.5.), 119-162면; 고재종, “일본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법학연구, 제55호(2018.2.), 215-243면; 이해원,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8-1호(2017.2.), 132-159면.
- 3) 한애라,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의 검토 - 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저스티스 제172호(2019.6.), 38-79면.
- 4)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2019.4.), 105-138면.
- 5)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제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중앙법학, 제20권 제3호(2018.9.), 375-411면; 김진우,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 성균관법학, 제30권 제2호(2018), 215-238면;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제478호(2018), 45-64면;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제89호(2019.12.), 3-49면;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171호(2019.4.), 5-48면; 김경석,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한 소고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부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2018.11.), 189-212면.
- 6) 박광민·백민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2017.12.), 153-178면; 윤영철,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과 형법의 '인격적 인간상'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2019), 95-123면.
- 7) 이보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을 통해 본 시사점”, 법학논문집, 제43권 제2호(2019), 5-35면.
- 8) 안수현, “지능형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자본시장법제 정비방향과 과제”, 증권법연구, 제18권 제3호(2017.12.), 137-176면.
- 9) 고학수, “인공지능과 고용차별의 법정제척 : 블라인드 채용과 베일의 역설을 중심으로”, 법정제척연구, 제16권 제1호(2019.4.), 39-70면; 고학수·정혜빈·박도현, “인공지능과 차별”, 저스티스, 제171호(2019.4.), 199-277면;

사표시 문제,<sup>10)</sup>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sup>11)</sup> 인공지능과 소비자보호의 문제<sup>12)</su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실현되기 어려운 먼 미래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논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IT 기기에 의한 자동화와 별 차이 없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논의하거나 그 논의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의 수준이 제각각이다.

우리가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 실제 사건에서 법을 적용하여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 파악(fact finding)’이라는 것과는 맥을 같이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논의의 대상인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이해의 평면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 법적 검토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만들기도 한다.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가상의 현상을 놓고 논의를 하는 것도 실익이 적어 보인다. 물론 가상의 상황이나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해석을 위하여 또는 입법을 위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상과학영화 속의 이야기를 두고 법을 만들거나 법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인공지능, 특히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고 약한 인공지능(weak AI),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지능폭발(intelligence explosion) 등의 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논자에 따라 다른 분류나 발전 단계를 예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를 상정하는 것은 법적 고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용적인 연구 결과를 위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실제 상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약한 인공지능이나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단계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sup>13)</sup> 실제 활용가능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크게 기업활동에서의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와 상거래에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한애라, “인공지능과 젠더차별”,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2019.12.), 1-39면.

10) 정진명, “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2019.2.), 1-40면;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2016.11.), 1639-1700면;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2015), 203-238면.

11) 권건보·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2호(2019.8.), 1-38면.

12) 서완석,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의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제37권 제1호(2018), 317-375면.

13)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이 유형적인 로봇과 일체화되어 독립적으로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통하여 사람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도 이 글의 논의에서는 배제하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기업활동이나 상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살펴보고, 기타의 문제로서 먼 미래의 강한 인공지능이나 지능폭발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필요한가의 문제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수용범위에 대하여도 살펴보겠다. 다만,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를 돕는다는 목표로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주로 문제제기 수준에서 각 쟁점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 II. 기업활동에서의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이나 내부적인 의사결정 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때에 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평가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법인 이사의 활동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업 운영의 일환으로 투자나 자금 운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구매조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법무 활동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각각 서로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이사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의 범위 속에서 위험을 줄이고 경영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D)을 활용하여 경영상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이는 기존의 소위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sup>14)</sup>의 문제와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이사가 경영판단을 할 때 (1)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분석 혹은 정보의 이용, (2) 경영판단을 위한 인공지능을 선택·결정, (3)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기초로 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그대로 따랐는지의 여부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

14)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최준선,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2017.3.), 367-413면; 오성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기준의 법리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2006.3.), 9-40면; 김순석,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판례백선, 법문사, 2012, 533-538면; 김광록, “미국의 최근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의 원칙”, 법학연구 제32권(2008.11.), 243-267면.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경영판단이 허용되는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sup>15)</sup> 미국의 판례로부터 발전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주의의무로부터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원리로 작용”<sup>16)</sup>한다. 우리 판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영판단을 행하되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에 이사의 법령위반, 충실의무위반 및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하고”<sup>17)</sup>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존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법리에 기초해 보면, 경영판단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하였다면, 이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사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존하였거나 인공지능의 판단만으로 경영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인공지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사의 능력 이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에만 의존하는 이사는 ‘경영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인공지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사의 활용 정도나 태양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Ⅲ. 상거래에서의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 1. 상거래에서의 인공지능을 통한 계약의 체결

기업과 기업 간의 상거래나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상거래에 인공지능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단순히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을 대체

1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6) 김택주,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 (대법원 2005.7.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6.3.), 65면.

17) 권재열,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2008.6.), 258-259면.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청약과 승낙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계약체결의 대상이나 상대방을 인공지능이 물색하고, 적절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인 의사표시의 개념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그대로 유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한 때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다.<sup>18)</sup>

### 가.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유용성

컴퓨터가 단순히 의사교환의 매개체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자연적인 방법에서 전달자를 매개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데이터의 입력을 기초로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나아가 의사결정 및 의사표시를 행하는 발전된 형태의 의사표시에서는 종래의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종래의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모든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개별적인 의사표시의 성립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적인 방식의 의사표시에서는 표시자가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개별적인 의사표시의 성립에 관한 인식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이미 입력된 결정기준에 따라서 의사를 표시한다. 또한 전자적인 방식의 의사표시는 인간의 자연적인 언어와 문자 등의 전통적인 표시수단과는 달리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기계 언어로 변환되어 해독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표시와 거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규범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의사표시와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을 반영하여 전자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기본 개념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sup>19)</sup> 그러나 종래 활용되던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설정된 엄격한 조건하에 해당 조건에 해당되면 계약 체결, 그렇지 않으면 계약 불성립 등이 결정되기 때문

18) 인공지능을 둘러싼 의사표시나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이론적 논의에 대하여는 선행연구인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2015)를 기초로 하여 발전시켰음을 밝힙니다.

19)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을 민법전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로서 오병철, “전자거래규정의 민법예외의 편입”, 「민사법학」, 제46호(2009.9), 147면;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민사법학」, 제48호(2010.3), 82면; 최경진, “살아있는 民法을 위한 管見”,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2011), 156면 참조.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장병주,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입법적 검토”, 「동아법학」, 제53호(2011.11), 259-294면; 최경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2011), 47-49면 참조.

에 당사자의 포괄적 의사표시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는데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로 발전해 가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포괄적으로 표시된 것이 더욱 확장된다. 특히 종래보다 더 발전된 “지능형”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진다.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따른 의사표시는 기존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논의와 다를 바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포섭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전된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고도의 지능형 판단에 기초한 전자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집적하고 분석하여 최초 설정된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여 상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지능의 축적에 따라 고도화가 계속 진행된 경우에 성립되는 상거래 계약의 경우에 그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 나.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상거래 환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효성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을 대신하여 일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존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 즉 기능 확대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처럼 지능형 소프트웨어 혹은 장치에 대하여 에이전트(Agent) 또는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라고 하여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기존에 논의가 이루어졌던 전자거래에서의 에이전트는 고객 대신 쇼핑물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가장 고객의 취향에 맞게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으며, 대금도 지불해줄 수 있다. 에이전트는 현재 사람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만, 장래에 일일이 사람의 의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사고판단에 의거하여 유효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게 될 개념으로 파악되었었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에이전트에 관한 논의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sup>20)</sup>

이러한 시각에서 ‘에이전트(agent)’에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 즉,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이라는 개념으로 통일상법전 제2B편 초안<sup>21)</sup>에서 사용되고 있으며(U.C.C. § 2B-102 (22)), 이 초안을 이어받아 발표된 통일전자거래법<sup>22)</sup>에서도 전자적 대리인의 개념(Section 2 (6))과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자동거래

20) 전자적 대리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신분으로부터 계약으로」라고 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전자적인 자동처리를 바탕으로 하는 처리주의, 즉 「계약으로부터 처리로」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夏井高人, 네트워크社會の文化と法, 日本評論社, 1998, 103-106頁.

21) U.C.C. 제2B편 초안에는 일일이 사람의 의사가 개재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대리인(Agent)의 행위에 의해서 전자서명이 유효하게 작성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U.C.C. § 2B-204, 402).

22) 통일전자거래법(Section 14)은 자동거래(Automated Transactio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당사자가 전자적 대리인의 행위나 그 결과 발생한 조건 및 합의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전자적 대리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며, (2) 이와 같은 계약은 전자적 대리인과 당사자 간에서

(Section 2 (2))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에서도 전자적 대리인의 개념(Sec. 106 (3)) 및 유효성(Sec. 101 (h))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UETA나 E-Sign 정도의 법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sup>23)</sup>에서도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과 관련하여 작성자에 의하여 프로그래밍되거나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료시스템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작성자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 또한 이후 채택된 UN 전자계약협약<sup>24)</sup>도 이와 유사하게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과 자연인 사이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그 계약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별적인 작용을 자연인이 검토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이나 집행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계약협약 제12조). 반면, 우리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전자계약협약과 우리 법을 비교해보면, 협약은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법적 유효성을 소극적으로 승인한 규정이고, 전자거래기본법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법적 효과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협약에 의하면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현이나 그에 의한 계약의 효력은 그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동법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작성자의 송신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다.<sup>25)</sup> 국제전자계약에서는 각국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기술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적극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협약과 같이 소극적으로 승인한 후 개별 케이스 별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전자적 대리인의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의사표시의 일정부분을 수행하는 전자적 수단에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자동적인 발신을 작성자의 송신으로 의제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의 귀속을 작성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까지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의 귀속 문제는 여전히 일반적인 민법의 영역에 남겨져 있다. 그런데 기존의 전자거래에서는 일반적으

도 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도 유효함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3)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2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5) 동 규정은 의제한다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및 거래안전의 보호에는 큰 의미가 있으나, 오류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하게 되어 표의자의 이익을 너무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정경영, “전자 의사표시 주체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5권 제2호(1998), 405면.

로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프로그래밍한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계약의 체결을 의욕한 이상 자동화된 송수신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의 효력을 작성자에게 귀속시키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지능”이 발전하여 인공지능에 기반을 두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의 효과를 그대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컴퓨터 등이 단순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계를 넘어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상거래계약에서는 소위 ‘전자적 대리인’ 개념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적인 규범이나 우리 법에 따르더라도 그 유효성은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반 계약 체결의 경우에 전자적 대리인의 인정범위, 즉 전자적 대리인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개별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전자적 대리인에 부여된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기본계약 등에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 영역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고 표의자가 위험을 인수한 영역 내에서 성립한 계약에 대하여는 표의자에게 그 효력이 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상거래 약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인공지능에 의한 상거래 계약과 착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동조 단서). 기존 전자거래에는 이러한 일반적 착오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거래 절차에서 입력된 데이터에 관하여 매도인이 화면상으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수인이 확인하였다는 데이터를 재전송함으로써 중과실이 인정되어 무효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형태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졌다.<sup>26)27)</sup> 이러한 전자상거래 실무에서의 착오론의 적용과 대응은 초기 단계의 인공지능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6) 名越秀夫·武石 誠·中條嘉則 編著, Q&A 情報流出と法的責任, 清文社, 1998, 80-81頁.

27) 박선중, “전자거래시 착오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상품의 장내거래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3호(2013.12), 84면에서는 “전자거래에서 비롯된 착오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상대방의 착오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므로, 민법 제109조의 적용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점, ② 전자거래시에도 결국은 언어와 행위능력이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목적물의 가격에 관해 서로 이해를 도모할 때 성립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만이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과 ③ 전자거래에서 착오 여부의 객관적 판단기준 중 하나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공정성을 도입하자는 점 등”을 주장한다.

즉, 기존의 착오에 관한 법리는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문을 하거나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일반적인 전자거래나 초기 단계의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 형태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주문자 또는 표의자의 습관, 주문 행태, 소비패턴, 활동 상태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잘못된 정보 또는 정보의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식료품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러한 인공지능의 착오를 표의자의 착오로 귀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인공지능의 판단과정까지 표의자의 의사표시 과정 속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표의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의사표시 기타 행위를 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인 착오이론에 따라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또한 표의자에게 중요한 과실이 없었어야 한다. 문제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실무 상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인절차를 둔 것과 달리 발전된 인공지능 상거래계약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인공지능의 지능적인 결정과 통신을 통하여 자동화된 전자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확인절차 - 자연인에 의한 개입 절차 - 가 없어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다. 취소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거래한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고,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신속한 거래와 지능형 자동화된 처리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해야겠지만, 거래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에 의한 개입 절차를 두는 것도 실무상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경우에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계약에 표의자의 책임이나 착오로 인한 계약의 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서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통한 착오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계약에서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막고 표의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계약체결 시에 표의자 본인의 확인을 구하거나 적어도 표의자에게 직접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표의자가 예측하지 못한 계약체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설계·구현하게 되면 실제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당사자의 책임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즉,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 (동법 제7

조)할 의무가 있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소비자 사이에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청약철회를 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유보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을 통한 상거래의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다(동법 제17조). 따라서 인공지능의 경우에 지능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계약의 최초 교섭과 체결까지도 인공지능이 행하는 단계가 오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위와 같은 착오 규정과 해석론,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정들에 의하여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인공지능에 의한 상거래와 약관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인공지능 상품을 구입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그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구매계약 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직 불완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약관에 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책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 조항들이 인공지능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에 포함될 경우에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사업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판관할의 합의나 준거법에 대한 합의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면책약관이나 재판관할·준거법 합의 관련 조항이 약관에 삽입되어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에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 약관 조항이 유효인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일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지능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인공지능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약관이 활용되는 경우에 일단 그 약관에 의한 계약 성립을 무조건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공지능 상품 또는 서비스 약관에 대하여는 기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동법 제7조). 또한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도 무효이다(동법 제14조).

#### IV. 기업활동·상거래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기업활동이나 상거래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특히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타겟 마케팅이나 자동화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소비자나 기업 내부 구성원 중 특정인에게 차별적 대우라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기업활동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소비자를 잃게 되어 결국 기업활동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EU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은 제22조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개별적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법적 효과를 야기하거나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로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1) 정보주체 및 정보컨트롤러 사이의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와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부과하고 컨트롤러가 준수하는 EU나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허가된 경우이거나 (3) 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GDPR 제22조는 개인별 맞춤형 의사결정이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권리로서 명시한 점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에 대한 규율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GDPR 제22조와 같은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한 규정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타겟마케팅을 하거나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거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으로도 우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활동이나 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확히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인공지능과 손해배상책임 - 인공지능 상품의 판매와 제조물 책임

기업이 판매하는 인공지능 상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상품을 제조한 제조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 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인공지능 상품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에 해당하여, 그 인공지능 상품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제조물 책임을 진다. 제조물 책임법 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결함의 유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인공지능 상품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인공지능 상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인공지능 상품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인공지능 상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인공지능 상품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인공지능 상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이외에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됨에 따라 책임을 지거나 면책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상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 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sup>28)</sup>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이란 기본적으로 동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민법 제98조의 물건 개념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기초로 한다고 이해하는 이상 소프트웨어가 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sup>29)</sup> 그러나 인공지능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나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상품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기기나 장비 등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비휘발성 메모리에 내장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형 소프트웨어 혹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라고 하는데,<sup>30)</sup> 이러한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인공지능 상품이나 기기에 내장되어 해당 인공지능 상품이나 기기와 일체로서 작동함으로써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동산인 제조물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동산인 제조물

28)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비교사법」, 제10권 제4호(2003), 303-304면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는 디스켓은 하나의 물건이 되어 제조물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전송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29) 이러한 해석이 종래 민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론인 반면, 민법 제98조의 물건 개념을 일반적·총칙적으로 이해하여 물건 요건론을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으로 구분하면서 물건 개념의 확대를 인정하는 최경진, “物件要件論小考”,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2004.6), 49-82면에 따르면 제조물에 소프트웨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0)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하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내 임베디드 SW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04.4, 5면 참조

(인공지능 상품)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독자적인 기능을 못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상품의 인공지능이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형태인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sup>31)</sup>

## VI. 기타 문제

### 1. 기업활동·상거래에서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인공지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기업활동이나 상거래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공지능에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sup>32)</sup>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현행법 해석상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입법정책적으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법인제도 또는 신탁제도 등 기존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제도를 둘 것인지의 문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인공지능 법인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 -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한 개 혹은 소수의 인공지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의 독립성 문제, 인공지능 법인격의 운영과 책임의 문제 등 풀어야 할 많은 숙제가 있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도 논의가 필요하다.

### 2. 기업활동·상거래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현행 법제는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위 ‘규제 샌드박스’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적용의 특례를 향유하게 되며, 일단 신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혁신’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과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하여 법이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였

31) 같은 취지로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문집」(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9집 제2호(2015), 91-92면 참조.

32)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중앙법학 제20권 제3호(2018.9.), 375-411면;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제89권(2019.12.), 3-49면;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171권(2019.4.), 5-48면.

다고 하여 무조건 혁신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에도 제13조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4항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실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진전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분명히 용이할 것이다. 보편적 인공지능을 이용한 때에는 그것만으로 혁신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서비스의 다른 측면에서의 혁신성을 증명해야 한다.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혁신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지능은 다른 것보다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혁신성에 기초하여 법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들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에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활동과 상거래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이 나 래(블록크래프터스, 변호사)

## I. 서 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 도입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IT를 기반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 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으로 유명한 스타벅스도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부터 커피기기 관리와 매장 위치 선정까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테크(tech) 회사라는 관점이 제시됩니다<sup>1</sup>. 인공지능이 다양한 기업 활동에 활용이 되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기업활동과 상거래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II. 기업활동에 인공지능 활용 사례

인공지능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통해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해 구조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sup>2</sup>. 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이용하기도 하고, 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점점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질의사항에 챗봇을 활용하여 답변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sup>3</sup>. 빠르게 유입되는 질의사항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답을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타겟팅하여 광고를

<sup>1</sup> Starbucks isn't a coffee business-it's a data tech company

(<https://marker.medium.com/starbucks-isnt-a-coffee-company-its-a-data-technology-business-ddd9b397d83e>)

<sup>2</sup> 구조화된 데이터란 열과 행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미 지정된 필드에 자료가 구분되어 있어서 쉽게 검색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반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란(unstructured data), 행과 열에 들어가지 않고 데이터 모델과 연결 지을 수 없어서 검색하고 관리하며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Forbe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tructured, semi-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2019년 10월 18일자,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9/10/18/whats-the-difference-between-structured-semi-structured-and-unstructured-data/#2726f42d2b4d>)

<sup>3</sup> ‘Bot Economy’ 와 챗봇의 부상,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9년 2월, p2

함으로써 광고 효율을 높이는 타겟 마케팅은 구글 등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sup>4</sup>.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거나, 대출신청자의 신용평가를 하여 대출신청자의 대출심사에 활용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가부 및 한도를 정하는 방법도 인공지능 활용의 사례로 소개됩니다<sup>5</sup>.

이사들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인공지능의 뛰어난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기업 활동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데이터를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사회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sup>6</sup>.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인 이사의 역할을 대체하여 궁극적으로 회사법의 중요한 문제인 대리인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sup>7</sup>. 2016년 Deep Knowledge Ventures라는 홍콩의 벤처캐피탈 회사가 VITAL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한 이후<sup>8</sup> 인공지능 이사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sup>9</sup>. 그러나 데이터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현재의 인공지능으로는 사람인 이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관련 데이터가 없는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할 수 없어 결론을 도출할 수 없고, 데이터를 통해 인과관계(causality)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correlation)를 도출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값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sup>10</sup>. VITAL 역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 출

<sup>4</sup> SBS CNBC, “유튜브의 무서운 영향력…유튜브 광고 이용한 홍보마케팅 ‘증가’”, 2019년 8월 27일자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53173>)

<sup>5</sup> Forbes, “10 machine learning methods that will save your order to cash”, 2019년 11월 2일자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19/11/26/10-machine-learning-methods-that-will-save-your-order-to-cash/#4ae24cbb79a5>)

<sup>6</sup> Barry Libert, Megan Beck, and Mark Bonchek, “AI in the boardroom: The next realm of corporate governanc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17년 10월 19일 (<https://sloanreview.mit.edu/article/ai-in-the-boardroom-the-next-realm-of-corporate-governance/>)

<sup>7</sup> Gramitto, Gergio, “The technology and archeology of corporate law”, Cornell Law School research paper No.18-40, 2018.8., p39

<sup>8</sup> Business insider, “A venture capital firm just named an algorithm to its board of directors—here’s what it actually does” (May 15, 2014) (<https://www.businessinsider.com/vital-named-to-board-2014-5>)

<sup>9</sup> 이 경우, VITAL은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고 참관인(observer)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oslein, Florian, 각주 11의 글, p650).

<sup>10</sup> Enriques, Luca and Zetsche, Dirk A., “Corporate technologies and the tech nirvana fallacy”, European

석해서 투자건과 관련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sup>11</sup>.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더라도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통해서 이사회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Ⅲ. 기업활동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

#### 1.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에 균형 잡힌 제도 수립의 중요성

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여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효율을 추구하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기업이 수집하고 활용할 때 데이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없도록 하고, 고객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데이터 전송요구권(the right to portability)을 규정하여 정보 주체가 데이터 통제자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받고 이를 다른 데이터 통제자에게 그 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데이터 통제자가 아닌 정보 주체에게 본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제17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 및 정보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제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설된 제도 하에서 어떻게 고객의 정보를 관리·보호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본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 되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긴장관계가 계속될 텐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활용은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적합한 제도와 실무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sup>11</sup> Moslein, Florian, “Robots in the boardroo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porate law”,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25장, Edward Elgar Pub, 2018.12.28, p649

## 2. 공정하고 투명한 인공지능을 위한 제도 마련

인공지능을 통해 신용평가를 하고 신용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가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도출해 낸 결과가 평가 대상에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은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언제나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현재 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러닝의 경우 과거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에 특정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었다면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차별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sup>12</sup>. 실제로 2019년 11월에 미국에서 골드만 삭스와 애플 사의 파트너십에 따라 발급된 애플카드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남편보다 더 낮은 신용한도가 주어졌다는 점이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사례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sup>13</sup>. 이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이 인공지능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론이 특정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적인 결론을 내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sup>14</sup>. 이는 아래에서 논할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인공지능이 결론을 도출한 과정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을 알 수 없어 ‘블랙박스’ 구조라고 지적됩니다<sup>15</sup>.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가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어야 소비자가 그 결과를 수용하거나 그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의 과정과 결론을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인공지능의 절차와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3. 새로운 대리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

<sup>12</sup> Boreciu, Frederik Zuiderveen, “Discrimin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decision-making”, Council of Europe, 2018, p10

<sup>13</sup> Apple card investigated after gender discrimination complaints  
(<https://www.nytimes.com/2019/11/10/business/apple-credit-card-investigation.html>)

<sup>14</sup> Boreciu, Frederik Zuiderveen, 위의 글

<sup>15</sup> Pasquale, Frank, “The black box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7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인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인공지능 설계를 담당하는 이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경우 인공지능이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이처럼 편향된 인공지능을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을 설계한 이는 이익을 보고 회사에는 해가 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sup>16</sup>.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을 총괄하는 이사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에 편향적인 학습데이터를 제공하여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면 해당 금융상품에 편향적인 추천을 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설명할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리인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IV. 인공지능 관련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이 회사의 대외적 기업 활동이나 대내적 의사결정에 활용이 될 경우 인공지능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입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수립된 거버넌스가 잘 준수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데이터의 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의 경우,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회사에서 수집해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내부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전제로 데이터의 출처를 기록하는 방법과 데이터 수집의 기술적인 방법에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방법에 관한 사항도 데이터 거버넌스로 규율 되어야 합니다<sup>17</sup>.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지 의사 결정을 하고 결정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상관관계를 학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인공지능

<sup>16</sup> Enriques, Luca and Zetzsche, Dirk A., "Corporate technologies and the tech nirvana fallacy",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Law Working Paper No.457/2019, p38

<sup>17</sup> Singapore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A proposed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ing framework", 2019.1, p11

의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론을 검증하는 감사 절차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험평가를 진행하여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경우 인공지능의 도입을 보류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인공지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V. 결 론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이 회사의 대내외적 상거래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역시 어떠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지에 따라 편향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고객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기업 활동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에는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고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활동에 인공지능의 도입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법제와 상사법이 밀접하게 접점을 형성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법제 간의 경계를 낮추고 상호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회사의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한국상사법학회 2019 동계학술대회 제3세션

# P2P 대출 규제법안의 분석

발 표 자 천창민 (서울과기대)

사 회 자 고동원 (성균관대)

토 론 자 노태석 (금융위원회)

성희활 (인하대)

# P2P 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천 창 민\*

## I. 여는말

2019년 10월 31일 대표적인 핀테크의 하나인 대출형 클라우드펀딩<sup>1)</sup>의 규제를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대출법’ 또는 ‘법’으로 약칭한다)이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고 11월 26일에 공포되었다. P2P대출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올해 8월 27일부터는 P2P대출 시장이 동법에 의해 규율될 예정이다.<sup>2)3)</sup> 언론에 따르면,<sup>4)</sup> 2019년 8월 14일 P2P대출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날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금융벤처회사를 위한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 “피로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 너무 울컥해서 눈물까지 난다”고 소회를 밝히며 격한 환영의 표시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P2P대출법은 핀테크산업을 대표하는 법으로서 P2P업계나 핀테크업계를 넘어 재계에서도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 법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입법적 관점에서도 P2P대출법은 전 세계 최초로 단독의 특별법에 의해 P2P대출 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P2P대출은 증권형 클라우드펀딩과 유사하게 다수의 자금제공자(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차입자)에게 대출(금전 소비대차)의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증권형 클라우드펀딩도 자금을 필요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GTM전공) 조교수, 법학박사

- 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언론 및 실무에서는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보다는 P2P대출 또는 P2P금융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나아가 P2P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자신들은 클라우드펀딩업자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규제 영역에서 클라우드펀딩이라고 하면 이미 자본시장법을 통해 법제화가 완료된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형 클라우드펀딩과의 차별을 피하여 증권형 클라우드펀딩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싶다는 내심의 의사표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P2P대출, P2P금융 또는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ce lending; 대출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클라우드펀딩이 가지는 한계에서 벗어나 -클라우드펀딩이기 때문에 가해질 수 있는 규제를 탈피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여 규제를 설계해 달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소개하겠지만, 사건으로는 어느 경우이든 해외의 학술적 논문이나 통계에 따르면 P2P대출을 클라우드펀딩의 하위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P2P대출이 클라우드펀딩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 2) 법 부칙 제1조. 다만, 제32조 제2항~제3항(투자한도 관리)과 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제37조~제4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은 각각 2021년 6월 1일 및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영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호), 이는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나 관련 기관의 선정·설립 등에 따른 시간적 필요를 고려한 규정으로 보인다.
- 3)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2019년 12월 중 부처간 협의와 하위법규를 입법예고 마치고, 2020년 1월에 규제위 심사, 4월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에 하위법규를 공포하여 조속히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9. 10. 31, 2면). 참고로, P2P대출법의 시행령은 1월 28일 입법예고 되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2호), 감독규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 4) 매일경제/임형준, P2P법 소위 통과에 “만세” 외친 박용만, 2019. 8. 15(<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8/632752/>).

하는 발행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의미한다. 이같이 P2P대출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그 기본적 구조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다. 그러나 그 법적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형식만 다르지 그 본질은 온라인상에서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자본시장법 규제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26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에서 제도화하였다.<sup>5)</sup>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P2P대출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직접적인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을 이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2월 27일부터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진 P2P대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P2P대출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P2P대출과 관련한 둘러막기, 허위대출, 부실대출, 업체부도, 횡령, 중개업체의 난립 등의 각종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른 관련 민원<sup>6)</sup>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었다.<sup>7)</sup> P2P대출법은 바로 이러한 법적 공백 내지 흠결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투자자 및 차입자 등 이용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성장과 금융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sup>8)</sup>

한편, P2P대출은 증권형과는 달리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심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sup> 예컨대, 차입자의 수입 내역을 차입자의 직업 이력과 유사한 직업을 가진 고객이 제공한 내역과 비교하는 작업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정확도 측면에서 효율적인 신용평가를 행할 수 있다.<sup>10)</sup> 국내 일부 P2P대출중개업자도 인

5)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세는 천창민, 온라인 주식서 자본시장법, 전면개정 제2판, 로앤비, 2019, 제9조 제27항 및 제117조의3~제117조의16 주석 참조.

6)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P2P대출 관련 민원은 3,15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4.8%(2,990건)가 투자·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며, 2017년 114건에서 2018년은 1~8월에만 2,959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P2P 대출 관련 민원 분석, 2018. 10. 참조).

7) 금융위원회, 앞의 2019. 10. 31 보도자료.

8) 법 제1조 참조. 다만, P2P대출법 제1조 범문의 구조상 법의 목적은, 일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혁신이고, 이용자 보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전체의 취지상 이용자 보호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법의 목적 중 하나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9) 배재권·이승연·서희진,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온라인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8. 8.(이 논문은 미국의 P2P대출업체와 국내 렌딩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대출이 실제 효용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현진,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P2P 소설 대출 채무자 부도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20권 제7호, 2019. 7.(이 논문은 실무에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것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렌딩클럽이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부도 예측 모델을 제시한 논문이나 이러한 모델을 실제 사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조. 참고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P2P 대출중개업자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Vishal Virani, Fintech Innovation: How P2P Lending Is Emerging With Help Of AI?, Online <<https://www.datasciencecentral.com/profiles/blogs/fintech-innovation-how-p2p-lending-is-emerging-with-help-of-ai>> 참조.

10) Vishal Virano, 위의 글에 따르면 미국의 P2P대출업체인 Upstart가 이 같은 비교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있다고 하나, 실무에서 실제 사용되는 관련 기술의 정도와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규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AD) 기술 등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동 기술 등을 국내 P2P대출에 접목하는 사례가 증증하여 이번 2019년 상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의 대주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계속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1)</sup>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고에서는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우선 P2P대출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P2P대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P2P대출법의 제정 연혁을 소개한다(II). 다음으로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을 P2P대출법이 상정하는 제도의 법적 구조, 중개업자 규제(진입 및 영업 규제 등),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 인프라 규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III). 또한, 국내 P2P대출시장의 실무와 관련하여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P2P대출법의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IV), 맺음말을 도출하기로 한다(V).

## II. P2P대출시장 현황과 문제점 및 P2P대출법의 입법 연혁

### P2P대출시장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의 부재에 따라 P2P대출시장의 현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P2P금융협회<sup>12)</sup>가 소속 중개업자들의 현황 등을 월별로 공개<sup>13)</sup>하고 있어 개략적인 시장 현황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P2P금융협회 소속이었던 렌딧, 팝펀딩, 8퍼센트 등 부동산(프로젝트금융) 관련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주로 개인대출을 취급하던 5개 P2P대출중개업자가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결성함에 따라<sup>14)</sup> 한국P2P금융협회가 공개하던 시장 통계는 더욱 불완전한

11) 규제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신용평가모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여야 하는 것인지, 즉,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검수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 것인지, 신용평가 알고리즘의 중요사항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상충이 있다면 이를 사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업무 소홀을 기초로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이 우선 인공지능 기술을 P2P대출에 접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12) 한국P2P금융협회는 2016년 6월 27일 결성되었으며 2017년 1월 사단법인화 되었다. 동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총 4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3) 한국P2P금융협회에서 공개하는 통계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입수할 수 있다. <<http://p2plending.or.kr/public/>>.

14)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5개 중개업자가 결성한 협의체의 명칭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이며 2018년 10월 5일 발족 되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P2P대출법의 제정에 따라 통합 협회의 설립을 위해 2020년 1월 21일 활동을 마무리하였다고 한다(서울경제/이지운, P2P 통합협회 출범 앞두고...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활동 마무리, 2020. 1. 21).

모습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P2P대출시장 통계는 2018년 11월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P2P대출시장을 전수조사한 후 발표한 자료<sup>15)</sup>와 2019년 11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며 발표한 자료<sup>16)</sup> 및 2020년 1월 금융위원회가 P2P대출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발표한 보도자료<sup>17)</sup>에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P2P대출(대출형크라우드펀딩)은 2007년 5월 머니옥션과 팝펀딩이 최초로 시작한 크라우드펀딩 유형이며<sup>18)</sup>, 현재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중개업자의 수 또한 가장 많은 유형이다. 팝펀딩을 제외한 대부분의 P2P대출중개업자는 2013년 전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12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업자로 등록된 P2P대출 중개업자는 총 239개사에 달하며,<sup>19)</sup>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각 8.6조원과 2.38조원이다. 차입자의 수는 약 2만명이고, 이 중 개인신용대출이 73%로 그 비중이 높으나, 대출잔액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의 66%에 달한다.<sup>20)</sup> P2P대출중개업자의 수와 대출 현황과 유형별 P2P대출 잔액 현황은 다음의 <표 1> 및 (표 2)와 같다.<sup>21)</sup> 차입자에게 받는 이자율은 신용도에 따라 연 8~15% 정도로 대부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P2P대출에서는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중개업자에 따라 차입자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입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2~8%,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0~2% 수준이다.<sup>22)</sup>

<표 1> P2P대출중개업자의 수 및 대출 현황<sup>23)</sup>

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중개업자 수 <sup>24)</sup>	27사	125사	183사	205사	239사
누적대출액	373억원	6,289억원	2.3조원	4.8조원	8.6조원
대출잔액	-	4,140억원	7,531억원	1.6조원	2.38조원

15) 금융감독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2018. 11. 20 보도자료.

16) 금융감독원,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2019. 11. 7 보도자료.

17)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 1. 28 보도자료.

18) 머니옥션과 팝펀딩 모두 2007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머니옥션은 폐업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9)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수는 총 15개사에 불과하다. 이중 기존의 증권회사를 제외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업중개업자의 수는 10개사이다.

20) 금융위원회, 2020. 1. 28 보도자료, 2면.

21) 참고로, 2016년 1월 26일부터 개시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누적 실적으로 보면 총 598개사가 1,164억원을 조달하였다(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www.crownet.or.kr](http://www.crownet.or.kr) 참조).

22) 금융위원회, 2020. 1. 28 보도자료, 2면.

23)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자료, 2면.

24) 연계대부업자로 등록된 업체 수 기준이다(영업개시 여부와는 별개).

〈표 2〉 유형별 P2P대출 잔액 현황<sup>25)</sup>

(단위: 억원)

구분	'18.6말(A)	'18년말	'19.6말(B)	증감율(B-A)
부동산 관련 대출	5,444	7,768	8,797	61.6%
부동산 담보	1,826	3,048	3,789	107.5%
부동산 PF	3,197	3,927	3,946	23.4%
자산유동화(ABL) <sup>26)</sup>	421	792	1,062	152.2%
신용대출	2,275	2,417	2,508	10.2%
기타 대출(동산 담보 등)	1,246	1,584	2,015	61.7%
계	8,965	11,769	13,320	48.6%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점증하는 연체율의 문제 외에도 P2P대출중개업자의 사기, 횡령, 돌려막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P2P대출 차입자의 연체율을 보면 2019년 6월말 기준 전체 연체율이 5.3%인데, 사기·횡령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가 제외 되어 이들을 합하면 연체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한편, 앞서 언급한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분석 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민원은 2015년 2월에 최초로 발생된 이래 잠복 되어 있다가 18년 6월에 1,402건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8월에 다시 978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sup>28)</sup> 피해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허위대출이 5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투자금회수지연(25.8%), 무등록 불법영업(8.3%), 자금횡령(6%), 정보 허위공시 및 과장광고(0.9%), 불공정 약관 등 기타 사유((0.8%) 등으로 다양하다.<sup>29)</sup>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관련 법령의 미비에 따른 규제공백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2017년 2월 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동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여 P2P대출중개업자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나 업무를 제휴한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의 한계상 투자자 보호의 부실과 업체의 난립 등의 문제는 예정된 것이었다.<sup>30)</sup> 이에,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안을 시작으로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5) 금융감독원, 2019. 11. 7 보도자료, 3면(이 통계는 금감원의 임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답하여 자료를 제출한 37개 P2P대출업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총 대출 잔액과는 다르다고 한다).

26) ABL(자산유동화대출)은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산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향후 발생할 수익금(분양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상환재원으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에게 실행하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

27) 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 P2P대출중개업자인 미드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평균 연체율은 11.98%이며, 2020년 1월 28일 기준으로는 12.65%이다(<https://www.midrate.co.kr/bora>). 참고로, 미드레이트에서 공개한 자료는 148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2020년 1월 28일 기준 평균수익률은 12.86%(P2P금융협회사는 13.27%)라고 한다. 참고로, 나라지표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의 2018년말 기준 기업 및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0.53%, 0.26%이다([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4)).

28)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자료, 6면.

29) 국민권익위원회, 위의 자료.

30) P2P대출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는 우선, 이지은, “P2P 대출 거래 규제의 입법안 검토”, 금융기술 법연구회 편, 『P2P 금융과 법』, 박영사, 2019(이하, “P2P 금융과 법”으로 인용), 342~355면 참조.

## 2. P2P대출법의 입법 연혁: 시장의 실무와 법적 대응

기술한 바와 국내 P2P대출은 2007년 5월 머니옥션과 팝펀딩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로부터 출발한다. 머니옥션은 당시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영위하던 대부업을 온라인으로 모델을 변경하여<sup>31)</sup> 현재 국내 P2P대출의 일반적 모델로 안착한 채권참가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팝펀딩(당시 한국인터넷금융)<sup>32)</sup>은 2008년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예금담보형 모델<sup>33)</sup>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직접형의 채택으로 인한 투자자의 대부업 등록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과의 제휴를 진행하여 투자자의 자금제공 행위를 차입자의 대출을 위한 예금의 담보제공 행위로 그 법적 구조를 설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이러한 영업모델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머니옥션(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과 팝펀딩은 금융위원회에 각각 질의를 하였고, 2009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로부터 머니옥션의 서비스에 참가하는 각 개인은 대부업 등록 의무가 없고 머니옥션은 관련 법규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심 및 추심 위임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sup>35)</sup> 즉, 2009년부터 국내 P2P대출의 모델은 불완전하나마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대부업자나 저축은행 등 대출·대부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간접형 P2P대출 모델을 승인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는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직접형 P2P대출이 아닌 간접형 P2P대출 모델이 정착하게 되었다. 양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sup>36)</sup>

31) 팝펀딩과 달리 머니옥션을 P2P대출을 시작하기 이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영위하던 대부업을 활용하여 머니옥션이라는 웹사이트에서 P2P 방식으로 대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최초의 모델에서는 대부자회사가 아니라 대부회사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를 대출해주는 익명조합모델을 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범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팝펀딩은 예금담보형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32) 팝펀딩은 2012년 한국인터넷금융(주)에서 법인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이전에는 한국인터넷금융 명의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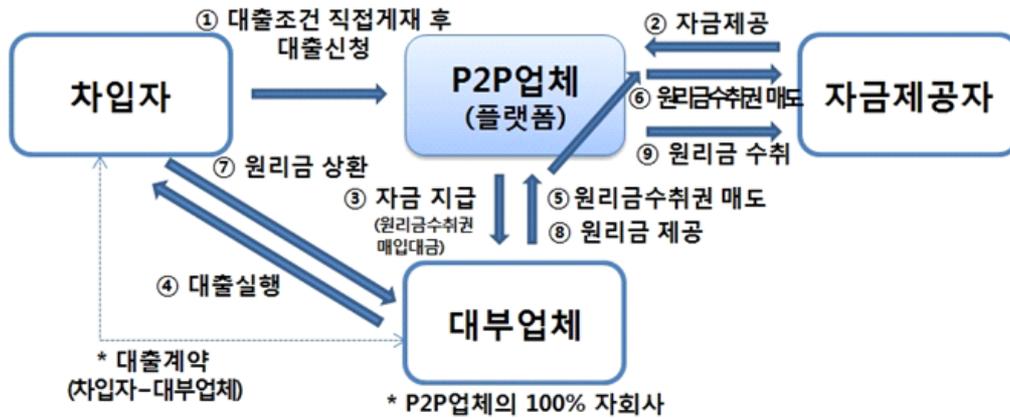
33) 고동원, “P2P 대출 거래의 유형과 법적 쟁점”, P2P 금융과 법, 50면 이하에서는 예금담보형 P2P대출 모델을 현금담보제공형이라고 하고, 대부자회사를 이용하는 모델을 원리금수취권매입형이라고 하며; 윤민섭, “P2P 금융의 법적 검토”, P2P 금융과 법, 14면 이하에서는 예금담보형 P2P대출 모델을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이라고 하고, 대부자회사를 이용하는 모델을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전자를 예금담보형, 후자를 대부자회사형 또는 채권참가형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34) 그러나 팝펀딩도 현재는 상호저축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예금담보형을 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팝펀딩소설대부(주)라는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축은행과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35) 팝펀딩 또한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예금담보형 모델과 관련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을 받았으나 현재 관련 자료의 분실로 확인은 불가하다.

36) 양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는, 윤민섭, 앞의 책, 14-21면 참조. 국내외의 P2P대출의 모델에 관한 소개로는 임정하, “P2P 대출의 법제화를 위한 과제 - 금융포용과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금융소비자연구 제9권 제1호, 2019년 4월호, 37-40면 참조.

<그림 1> 대부회사형/채권참가형 P2P대출 구조<sup>37)</sup>



<그림 2> 예금담보형 P2P대출 구조<sup>38)</sup>

## 담보

## 투자자 실 계좌

## 9. 현

### 2. 투자금

### 3. 경매 참가

## 담

37) 금융위원회,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17.8.29일부터 금융위·원 감독 개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 2017. 8. 28 보도자료, 5면.

38) 과거 팝펀딩에서 채용하였던 대출구조 중 하나로서, 이 그림은 100만원을 담보수수료율 연10%로 3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때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각 계약 등 예금담보형 구조에 대한 상세는, 고동원, 앞의 책, 52~55면 참조.

그러나 대부회사형 내지 채권참가형 P2P대출 구조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측면에서 투자자가 상환의 이중위험 즉, 차입자가 상환을 하지 못함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과 대부회사나 여신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sup>39)</sup> 또한, 대부회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대부업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상 문제도 있었다. 또한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질이 모호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도 많았고<sup>40)</sup>, 투자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영리추구(이자수익)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므로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문제도 여전하였다. 이 외에도 규제 공백으로 인한 관련 법률상의 문제가 다수 존재하여,<sup>41)</sup> 2015년부터 업계를 중심으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sup>42)</sup>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정되자, 2016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당시 미국과 중국 등의 부정대출이나 자금유용 등의 사례와 같이 금융사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P2P대출중개업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하였다.<sup>43)</sup>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7월 22일부터 TF를 운영하여 11월 3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5월 29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다.<sup>44)</sup> 가이드라인은 크게 총칙과 대부회사와 같은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나뉘며,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확인사항에서는 사업정보,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광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영업행위, 투자금의 별도관리, 투자한도, 자료제공, 법령과의 관계,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9) 고동원, 앞의 책, 51면.

40)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반해 윤민섭, 앞의 책, 33면은 채무증권의 대량의 발행·거래 대상이라는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증권 유형에 포섭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한다(이지은, 앞의 책, 359면도 동지). 사건으로는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로 증권과 같이 전전유통될 수 있고, 투자성은 시장위험으로 인한 것도 포함하므로 자본시장법의 관점에서는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실사 채무증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으로 성질결정할 수 있음을 분석한 문헌으로는, 성희환, “P2P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 2016 참조.

41) 이에 관한 분석으로는 고동원, 앞의 책 55~74면 참조.

42) 대부업자가 아닌 제도권의 정상적인 금융업자의 하나라는 점이 필요하였던 대출형(P2P대출) 클라우드펀딩 업체들은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법을 통해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대출형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라도 대출형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 달라는 업체의 비공식적인 청원도 있었다.

43) 금융위원회, 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6. 7. 12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하였다.

44) 가이드라인의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 2.27일부터 시행 -, 2017. 2. 27 보도자료, 4면 이하 참조.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P2P중개업자를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직접 적용 받는 대상은 연계 금융회사로 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규제대상이었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시도하였다.<sup>45)</sup> 그러나 대부분의 P2P대출중개업자가 채택하고 있던 대부자회사 모델의 대부자회사는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면 되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규제관할 밖에 있었다.<sup>46)</sup>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에서 2018년 3월 2일 대부업법시행령 제2조의4를 신설하여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 특성과 기존 대부업자 등의 규제우회나 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의 겸영을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증과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 등 시장의 확장에 따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sup>47)</sup> (1) 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2)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3)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4)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5)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한계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의원안을 필두로 2018년 2월 6일 박광온 의원안, 2018년 2월 23일 김수민 의원안, 2018년 4월 13일 이진복 의원안, 2018년 8월 28일 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은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었고, 박광온, 박선숙 의원안은 각각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P2P대출을 규제하고자 하였다.<sup>48)</sup> 최종 법안은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이 대체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진복 의원안<sup>49)</sup>이 최종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요약하면 <표 3>과 같다.

45) 이는 P2P대출중개업자에 대해 법적인 규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조금이나마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46)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로 한정된다.

47)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 12. 12 보도자료, 1면. 개정 내역의 상세는 6-8면 참조.

48) 각 법안에 대한 검토로는 2019년 10월 국회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의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가장 상세하다. 그 밖에 각 법안에 대한 간략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지은, 앞의 책, 355-370면 참조(다만, 검토의견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49) 업계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안을 작성한 후 이진복 의원을 통해 이른바, ‘청부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 P2P대출 관련 의원발의 법안 비교<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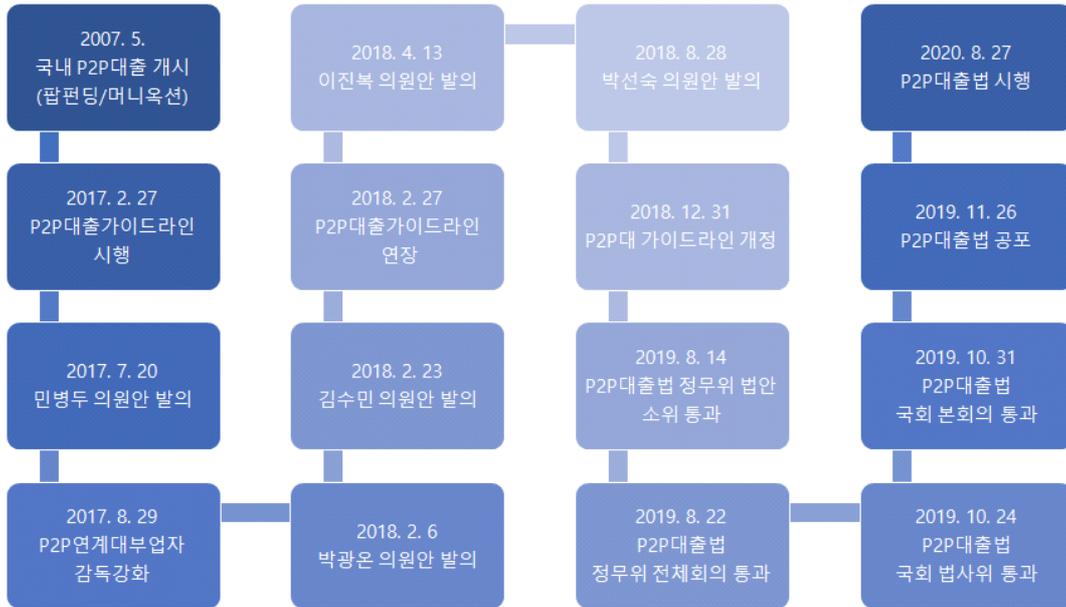
(발의일)	민병두 ( '17.7.20.)	김수민案 ( '18.2.23.)	이진복案 ( '18.4.13.)	박광은案 ( '18.2.6.)	박선숙案 ( '18.8.28.)	
입법형태	특별법 제정			기존 법률 개정	기존 법률 개정	
입법안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P2P대출의 법적구조	불명확 <sup>1)</sup> (간접대출형)	직접대출형	간접대출형	직접대출형	불명확 <sup>2)</sup> (간접대출형)	
진입규제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조직형태와 자기자본	법인, 3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주식회사, 5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주식회사 5억원 이상	
영업행위규제	공통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 ①과장광고규제, ②공시규제, ③설명 의무, ④신의성실의무 등		차입자 보호 중심 (이자율제한,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중심 (공시규제 등)	
	자기 투자	제한없이 가능	투자금 95%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 가능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 가능	-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 가능
	선 대출	규정없음 (해석상 가능)	금지	규정없음	규정없음 (해석상 불가능)	규정없음 (해석상 가능)
투자한도	시행령 위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적격투자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개인 1억원, 소상공인 5억원, 법인 10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용자 보호 규정	①투자예치금 별도보관 ②손해배상책임	①투자예치금 및 상환금 별도보관 ②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전환)	①투자예치금 및 상환금 별도보관 ②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전환)	투자자 보호 규정 부재	①투자예치금 별도보관 ②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전환)	

주: 1) 정의규정(§2)에서는 단순한 중개로서 직접대출형을, 대출계약의 체결(§)은 간접대출형을 상정  
2) 신용공여(대출)는 중개업자가 하는 간접대출형이나, 차입자가 증권발행 공시를 하는 직접형 혼재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의한 P2P대출법의 제정 연혁의 주요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50) 금융위원회, 앞의 2018. 12. 12 보도자료, 12면;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2019. 1. 3 보도자료, 12면의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림 3〉 P2P대출법 제정 연혁 요약



### Ⅲ.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핵심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투자자 보호 법익과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산업 정책적 법익의 조화이며, 자본시장법을 통해 구현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다.<sup>51)</sup> 이에 반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즉, P2P대출에서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차입자의 보호, 채권추심, 담보관리, 투자자예치금 및 상환된 원리금의 관리 등 차입자와 대여자 양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별도의 발행인 보호라는 문제가 없으나, P2P대출에서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차입자로 등장하고, 추심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보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나 개인정보의 보호도 필요하다. 아울러 P2P대출에서는 증권형과 달리 투자자의 예치금이나 상환금이 P2P대출중개업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장기간 관리되고 있어 이에 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증권발행의 중개에 거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P2P대출에서는 중개업자가 차입자의 신용 정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출상품 자체를 설계(제조)하는 수준 정도의 업무를 하게 되므로 제도 설계 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P2P대출법은 P2P대출이 가지는 바로 이러한 특성과 한국적 시장 상황 및 기존의 타

5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상세는, 은주/천창민, 제9조 제27항 및 제117조의3~제117조의16 주석 참조.

금융업법 등의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P2P대출법이 상정하는 P2P대출의 법적 구조, 중개업자 관련 규제,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인프라 규제 등을 중심으로 동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 1. 법적 구조: 간접형 P2P대출

대부회사 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우리나라 P2P대출시장의 현 구조는 기존의 금융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영국과 같이<sup>52)</sup> P2P(Peer to Peer)의 말뜻에 맞게 자금의 차입자와 대역자가 직접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직접대출형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차입자 보호의 약화 문제 즉, 대역자인 투자자가 차입자의 정보를 알게 되어 개인 정보 등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노출될 수 있고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추심을 받게 되어 차입자의 사생활 보호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국내 대다수 P2P대출이 담보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담보의 경우 저당권 설정에 모든 투자자가 등기부에 등록할 뿐만 아니라 원리금수취권의 양도가 있게 되는 경우 담보권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므로 계속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실무적 문제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P2P대출법은 직접대출형이 아닌 중개기관(intermediary)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sup>53)</sup>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대출형으로 P2P대출의 법적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P2P대출시장의 대역자(투자자)<sup>54)</sup> 측면은 투자시장에 해당하고, 차입자 측면은 대출시장이라는 혼성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접대출형이기 때문이다. 간접대출형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투자자 측면을 중개기관인 P2P대출중개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을 적용하고, 차입자 측면은 대출시장으로서 대출과 관련한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sup>55)</sup>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투자자(대역자) 측면은 이를 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시장으

52) 영국의 P2P대출은 기본적으로 중개기관이 차입자와 대역자(투자자)의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기능에 그치며, 계약의 주체는 차입자와 대역자이다. 영국의 P2P대출과 관련 규제에 대한 상세는 구정환·이규복,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7. 10, 33-57면; 이지은, “영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99면 이하; 정대, “영국의 핀테크산업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거래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제17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천창민 외 4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 3, 118-128면; Vincenzo Bavoso, The Promise and Perils of Alternative Market-Based Finance: The Case of P2P Lending in the UK, Journal of Banking Regulation (2019), <https://doi.org/10.1057/s41261-019-00118-9> 참조.

53) P2P대출법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법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54) P2P대출법 대역자 대신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2조 제5호는 투자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자를 하는 자로서, 이에 연계투자자를 통해 원리금수취권을 최초로 취득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후 원리금수취권의 전전유통으로 이를 양수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대역자라는 용어 대신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금제공자 측면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대역자가 투자목적의 자금제공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55) 미국의 P2P대출 규제에 대한 상세는, 노태석·석지웅, “미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139-157면; 천창민 외 4인,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 105-113면 참조. 미국의 P2P대출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리한 국문 자료는 노태석·석지웅, 앞의 책, 150면 참조.

로 보고 기존의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차입자 측면은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에 해당하는 대금업법을 적용한다.<sup>56)57)</sup>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P2P대출법은 제3의 여신금융회사의 개입이나 중개기관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그간 대부자회사를 통해 기형적으로 P2P대출을 실행해오던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다 직관적이고 실질에 맞게 규범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P2P대출법 제2조 제1호는 P2P대출 행위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그 뜻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sup>58)</sup>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sup>59)</sup>(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즉, P2P대출중개업자를 중심축에 두고 연계투자 측면과 연계대출을 분리함으로써 P2P대출의 법적 구조가 간접대출형임을 내포하고,<sup>60)</sup> 차입자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P2P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sup>61)</sup> 연계대출을 받은 자로 정의함<sup>62)</sup>은 물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연계대출계약의 당사자가 P2P대출중개업자와 차입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상 P2P대출의 법적 구조가 간접대출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형 P2P대출의 명확한 법적 구조와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P2P대출법 제2항 제3호는 연계투자를 통해 투자자 취득하는 권리를 ‘원리금수취권’ 이라고 칭한다. 이는 대부회사형 P2P대출의 채권참가를 통해 투자자에게 부여하던 원리금수취권과 동일한 용어이다. 그런데 P2P대출법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

56) 일본의 P2P대출 규제에 대한 상세는, 강영기, “일본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202-121면; 천창민 외 4인, 위의 보고서, 161-163면 참조.

57) 독일의 P2P대출 규제 또한 간접대출형이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P2P대출 규제에 대한 상세는 최문희, “독일의 핀테크(Fintech)의 현상과 규제 - 대출형 크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집, 2016, 137면 이하; 안수현, “독일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166-183면; 천창민 외 4인, 앞의 보고서, 128-138면 참조.

58) 향후 시장의 발전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특정 차입자가 단수의 차입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특정 차입자인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59) P2P대출법상 대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없다. 이는 한국은행법이나 은행법도 마찬가지이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대출을 은행업의 본업으로 정의하는데, 은행법상 대출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예금을 받거나 중개업체가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P2P대출에서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후자의 채무증서를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부여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은행과 P2P대출중개업자의 대출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P2P대출법에서 대출도 신용공여행위에 속하나 투자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대출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0)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장은 주어가 없으나, 투자자나 차입자, 온라인플랫폼의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 당연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즉, P2P대출중개업자를 주어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제2조 제1호의 규정상 P2P대출은 간접대출형으로 설계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61) 다만, ‘통하여’ 보다는 ‘로부터’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보다 직관적으로 간접대출형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2) 법 제2조 제6호.

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정의만으로는 원리금수취권이 종래의 대부자회사형 모델에서와 같은 채권참가로 취득하는 채권적 권리인지 아니면 익명조합의 지분인지, 아니면 준위탁계약에 따른 권리인지, 그도 아니면 의제신탁에 따른 수익권인지 분명하지 않다. 시장의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학설의 발전에 맞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으로는 우선 원리금수취권은 P2P대출법에 따라 창출된 특수한 권리로서 차입자의 변제를 조건으로 P2P대출중개업자에게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자인 P2P대출중개업자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절연되어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한 법적 권리이고,<sup>63)</sup> 그 본질은 의제신탁에 의한 수익권에 가깝다고 본다.

참고로, 5개의 의원 입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17~2018년 금융위원회의 비공식 TF에서 금융위원회는 최초 익명조합형으로 P2P대출의 법적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갖는 권리는 익명조합의 지분증권으로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회 및 내부 논의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원리금수취권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의원안 등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등에서는 익명조합형의 경우 영업자가 재산의 소유자가 되므로 P2P대출중개업자가 이를 유용하여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익명조합 원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sup>64)</sup> 아마도 이러한 견해가 반영되어 현재와 같이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대신 원리금수취권이라는 명칭 하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P2P대출의 법적 구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P2P대출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P2P대출중개업자의 P2P대출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해서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차입자의 신용상태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4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P2P대출중개업자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없이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투자자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원리금수취권은 그 법적 성질이 학설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원리금수취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63) 법 제28조 참조. 제28조의 규정은 매우 강력하고도 독특한 규정이다. 제28조에 따른 도산절연의 직접적인 대상은 연계대출채권이나 연계대출채권의 도산절연에 따라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이 반사적으로 절연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64) 예컨대, 조용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0. 22면. 사건으로는 횡령죄로 중개업체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여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은 다소 거친 면이 있다고 본다. 횡령이 아니면 배임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적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시장의 위축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법 제3조 제4항은 원리금수취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65)</sup>

## 2. 중개업자 규제

### 가. 진입규제 및 업무규제

#### 1) 진입규제

차입자와 대여자(투자자)가 절연되는 간접대출형 구조에서는 은행대출과 유사한 간접금융의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개기관의 건전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그리고 간접대출형에서 대여자인 다수의 투자자와 차입자와의 접점은 P2P대출중개업자이므로 중개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영업행위 등이 중요하다.

P2P대출법은 이러한 P2P대출중개업자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다양한 중개업자의 진입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동일하게 등록제를 택하고, 최소 진입자본도 5억원으로 규정한다.<sup>66)</sup> 그러나 증권형과는 달리<sup>67)</sup> P2P대출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법시행령안”)에서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연계대출의 규모<sup>68)</sup>와 연동하여 3단계로 규정한다. 즉,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연계대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의 자기자본을 필요로 한다.<sup>69)</sup> 은행과 달리 P2P대출중개업은 자기자본이 아닌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대출규모가 증가한다고 하여 중개업자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sup>70)</sup> 따라서 대출규모에 연동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P2P대출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양면시장의 플랫폼업자로서 대출을 많이 일으킬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입자에 대한 심사를 부실하게 하여 보다 많은 투자연계 대출상품을 판매할 유인을 가진다. 법시행령안에서 대출규모(대출잔액)에 연동하여 보다 많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인을

65) 아마도 입법자들은 이 같은 해석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제3조 제4항의 문구를 축조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만약 원리금수취권이 원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려고 했다면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아닌 다른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법 제3조의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 제3조에서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양자 모두 부족한 면이 있어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제3조 제4항을 현재와 같이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66) 법 제5조 제1항 제2호.

67) 증권형은 자기자본을 5억원 하나로만 규정한다.

68) 연계대출의 규모는 연계대출 잔액을 의미하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결정한다(법시행령안 제3조 제1항 본문).

69) 법시행령안 제3조 제1항 각호.

70) 그러나 대출규모가 증가하면 연체규모도 같이 증가할 수 있어 추후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한편, P2P대출법 제12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자기자금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때 자기자금투자는 연계투자 잔액의 100%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자기자금투자의 여력도 높아진다. 따라서 연계대출 규모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한 반면 자기자금투자 여력 또한 많아진 자기자본에 비례하여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sup>72)</sup>

자기자본과 관련한 요건 외의 등록 요건이나 절차는 대체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상의 규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P2P대출중개업자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P2P대출의 법적 구조가 간접대출형이라는 점에서 증권발행의 단순 중개에 그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보다 더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검 요소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상당수의 P2P대출은 담보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담보의 가치평가를 위한 적절한 인력이나 담보관리와 실행을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소는 대출채권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sup>73)</sup>

한편, P2P대출중개업자의 등록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로서, 현재 P2P대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P2P대출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는 P2P대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sup>74)</sup> 따라서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등록하지 않고 종래의 방식에 따라 P2P대출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등록 P2P대출업자가 된다. 또한, P2P대출법의 공포 당시 P2P대출업을 영위하던 중개업자는 법의 공포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으로써,<sup>75)</sup> 법 시행일 이전에 업자를 심사하여 등록을 완료토록 함으로써 시행일에 맞추어 기존의 P2P대출중개업자가 곧바로 P2P대출법에 따라 영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76)</sup>

71) 참고로, 영국에서도 대출규모에 따라 자기자본의 증가를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이지은, “영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115면 참조.

72) 자기자금투자 규제에 대하여는 영업행위규제 부분에서 후술한다.

73) 윤민섭, “담보형 P2P 대출 거래”, P2P 금융과 법, 95면은 등록요건으로서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이에 대한 외부평가 등을 의무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평가의견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집회 등을 통해 투자자가 담보권 실행을 결정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의견 수렴과 결정 절차를 별도로 제공할 것인지는 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사채권자 집회에 준하는 절차는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는 실무상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4) 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75) 법 부칙 제5조.

76) 이 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보다 입법적으로 한층 진보한 측면이다. 그러나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일 이후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실무적으로 금융위에서 미리 모든 심사를 마치고 시행일에 곧바로 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시켜 시행일에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마도 P2P대출에서도 이러한 증권형의 사례를 감안하였거나, 아니면 이미 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상당수이므로 이들 업체만으로도 시행일 두 달 전부터 등록을 받아 P2P대출법에 따른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이유이든 입법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 2) 업무규제

P2P대출법 제13조는 P2P대출 중개업자의 업무를 고유업무와 고유업무에 연계된 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 규정한다. 우선 P2P대출 중개업자의 고유업무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즉, P2P대출중개업자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자기계산에 의한 연계투자업무, (3)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연계업무로는 (1)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를 위한 원리금수취권의 가치평가업무, (2)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가 가능하다.<sup>77)</sup>

다음으로, P2P대출 중개업자가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로는 (1)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신용조회업, (2)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3)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5)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감독규정에서 금융업무이다. 자본시장법상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특수한 유형의 투자중개업<sup>78)</sup>이므로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P2P대출 중개업자는 증권형을 겸영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두 가지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을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당연한 것이겠지만,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로 웹사이트 등을 분리하여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추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도 P2P대출중개업을 영위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므로 조속히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금법상 전금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수업무는 P2P대출 중개업자가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법시행령안에서 별도로 그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다.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수업무 중 일부나 타 P2P대출 중개업자가 공고하여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신고 없이도 영위가 가능하다.<sup>79)</sup> 신고한 부수업무의 내용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sup>80)</sup>

77) 법시행령안 제13조.

78)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로 정의되어 있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79) 법 제14조 제2항.

80) 법 제14조 제3항.

P2P대출 중개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업무위탁 규제이다. P2P대출업무의 본질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위탁을 허용하게 되면 진입규제를 잠탈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제15조 및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는 필수적인 업무로서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 9가지를 열거한다.<sup>81)</sup>

## 나. 영업행위규제

### 1) 신의성실의무와 P2P대출중개업자 관련 정보의 공시의무 등

P2P대출법 제3장은 P2P대출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자본시장법 제37조와 유사하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P2P대출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제10조는 간접대출형을 취함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자 자체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sup>82)</sup> 또한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뚝으로써<sup>83)</sup> P2P대출중개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2) 수수료 규제

P2P대출법은 P2P대출중개업자가 이용자 즉, 차입자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과 대출이자를 대부업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율 상한<sup>84)</sup>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sup>85)</sup>. 이 규정은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 등은 차입자로부터 대부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sup>86)</sup>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시적으로 P2P대출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수수료를 받을 경우 지켜야 할 행위규칙도 함께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금리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P2P대출중개업자가 차입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최고금리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sup>87)</sup>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지

81) 위탁이 금지되는 9가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준법감시인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업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업무, 7.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해지 업무, 8.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업무, 9. 투자자 모집(연계투자 신청서 접수, 연계투자 신청서 및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업무.

82) 공시해야 할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안 제9조 참조. 이 중 중요 사항으로는 누적 연계대출 금액과 연계대출 잔액,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83) 내부통제기준은 법 제17조에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다.

84) 현재는 24%이다(대부업법시행령 제5조 제2항).

85)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86)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87) 참고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sup>88)</sup>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 차입자의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등은 최고금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sup>89)</sup> P2P대출중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하며, 동 부과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sup>90)</sup>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가 없으나, 예컨대 차입자가 일정한 비용을 더 지급할 경우 플랫폼 상단에 해당 P2P대출상품이 게시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취급되어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목표금액을 초과하여 투자금이 모인 경우<sup>91)</sup> 그 투자자를 우대하는 것은 과도하게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부업법은 금리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경우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규정한다.<sup>92)</sup> 그러나 P2P대출법은 유사한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최고금리를 위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만 규정한다.<sup>93)</sup> P2P대출법의 해석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대부업법과 같이 초과 이자율에 대해 무효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후 개정시 차입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여 초과한 이자율을 P2P대출중개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광고규제

온라인을 통해서만 영업을 진행하는 P2P대출중개업자 측면에서 광고는 차입자 및 투자자 모집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비대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분별한 대출이나 투자를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광고규제가 존재하여야만 건전한 시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P2P대출법 제19조는 대출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 비용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88)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비공식 TF에서는 프로모션을 위해 차입자가 지출하는 비용(예컨대, 보너스 쿠폰 등)도 최고금리 산정에 포함되도록 논의하였으나, 최종 조문에서는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만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차입자가 P2P대출을 성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프로모션용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9) 법시행령안 제10조 제1항.

90)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수수료 부과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시행령안 제10조 제2항 참조.

91) P2P대출 실무에서는 모집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모집기간이 있는 경우 목표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이 모집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따라 또는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증권형에서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다수의 소액주주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릴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P2P대출에서는 주식과 달리 단기의 만기로 자금을 모집하므로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할 필요는 적다고 본다. 향후 감독규정 등에서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2)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93)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과 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먼저 규정하고, 투자자를 위한 연계투자 광고규제와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대출 광고규제를 각각 규정한다.

우선 P2P대출중개업자의 모든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지 규제로서 P2P대출중개업자는 과장·축소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우위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타 P2P대출중개업자 또는 그 P2P대출중개업자 상품에 대한 비방 광고, 원금보장 등의 오인 광고,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sup>94)</sup>

또한 P2P대출 중개업자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을 광고할 수 없다.<sup>95)</sup>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해석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명시적 사전 동의만 있다면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것이 특징인 P2P대출업의 본질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 대해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광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위규정을 두거나 업무방법서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반면, 차입자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광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적절한 제한 하에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명시적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동의의 유효기간이나 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가입과 관련한 약관에 관련 동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명확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과는 별도의 광고 관련 사전 동의 요구서를 통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도 1년 정도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P2P대출중개업자는 고객이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 해당 광고를 할 수 없다.<sup>96)</sup> 그러한 거부의를 밝힌 후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간<sup>97)</sup>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광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가능한데, 다른 종류의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sup>98)</sup>

투자자에 대한 투자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P2P대출중개업자는 특정 연계투자상품이나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과 그 밖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sup>99)</sup>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94) 법 제19조 제1항 각호 및 범시행령안 제1항 각호.

95) 법 제19조 제2항.

96) 범시행령안 제18조 제2항.

97)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 연계투자상품과 연계대출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광고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 1개월 내에는 다시 연계투자상품 광고를 할 수 없고, 차입자가 광고 거부의를 표한 경우 1월 내에는 다시 연계대출상품을 광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99) 투자광고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범시행령안 제18조 제4항은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받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 상품 광고를 하는 자,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 상품 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sup>100)</sup> 광고위탁 시 타 매체운영자가 연계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P2P대출 중개업자가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2) P2P대출 중개업자로부터 (1)에 따른 설명을 받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P2P대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 상품 광고를 하는 자,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 상품 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sup>101)</sup> 그런데 현재의 광고 실무를 보면 사실상 타 광고 매체의 운영자 플랫폼(예컨대,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등)에서 단순한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계약까지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한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에 속하고,<sup>102)</sup> 판매 채널을 자신의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를 무한정 확장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2)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바로 광고를 하는 타 매체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P2P대출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P2P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2)에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미는 광고를 위탁받은 자신은 광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은 P2P대출업체를 통해 하라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투자광고 규제와 유사하게 차입자에 대한 대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P2P대출 중개업자는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법시행령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P2P대출 중개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밖에 차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아마도, 감독규정에서는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경고문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그 밖의 영업행위규제: 자기자금투자 금지 및 부당행위 금지 등

법 제12조 및 법시행령안 제12조는 그 밖에 P2P대출업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행위규제들을 규정한다. 우선, P2P대출중개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P2P대출중개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sup>103)</sup>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

100) 법 제19조 제4항.

101) 법시행령안 제18조 제4항.

102) 법시행령안 제14조 제1항 제5호.

103) 법 제12조 제1항 및 법시행령안 제12조 제7호.

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sup>104)</sup>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목표금액에 도달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all or nothing 방식(목표도달형)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차입자가 연계대출금액의 변경 즉, 목표금액의 하향을 요청하고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사를 재확인한 후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sup>105)</sup>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변경요청 가능시점의 문제와 재확인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P2P대출은 증권형과 달리 모집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P2P대출법도 모집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자는 어느 시점에서든 목표금액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를 재확인만 하면 연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시규제나 중개기관의 진입규제를 낮추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한 일반 대중의 일정한 성원(목표금액의 80%)을 얻지 못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만, P2P대출 규제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점은 크게 중요한 요소로 삼지 않아서 대화채널에 대한 규제도 전무하고, 자금의 조달도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재확인’의 해석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P2P대출이 크라우드펀딩이 아니라는 업계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금조달에 있어 일정한 엄격성은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는 투자 의사를 밝힌 자 전원의 동의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변형된 목표도달형 내지 조건성취형을 택함에 따라 목표금액의 80%라는 조건만 성원이 되어도 자금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P2P대출에서도 자기자금투자는 금지되지만 목표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2P대출중개업자가 자기자금으로 20%를 투자하여 자금모집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sup>106)</sup> 자기자금투자 내지 자기투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면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기투자는 허용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P2P대출법은 자기자금투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열거하여 자기자금투자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나열한다. 중요한 것으로는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자금투자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가능하며,<sup>107)</sup> 자기자금투자는 영업과 독립된 부서에서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P2P대출 중개업자의 연체율이 30% 이하가 아닌

104) 법 제12조 제2항.

105) 법 제12조 제3항.

106) 법 제12조 제4항 제1호 및 법시행령안 제11조 제1항.

107) 법 제12조 제4항 제2호.

경우<sup>108)</sup>에는 자기자금투자가 금지되며, 동일 차입자에 대한 자기자금투자는 10%<sup>109)</sup>를 초과할 수 없다.<sup>110)</sup> 나아가, 자기자금투자를 한 경우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지 못하며, 원리금수취권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양도하지 못한다.<sup>111)</sup> 그리고 P2P대출 중개업자가 자기자금투자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sup>112)</sup> 한편, 자기자금투자에 대해서도 그 시점이 문제된다. 즉, 자기자금투자는 모집금액이 80% 이상 모집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80% 이상만 되면 언제나 자기자금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상 중개업체의 선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자금투자는 모집기간이 종료된 후에 실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기자금투자를 할 수 있음을 미리 공시하여 P2P대출의 투자모집을 하는 경우에는<sup>113)</sup> 반드시 모집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모집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모집된 금액이 목표금액의 80% 이상이나 100%가 아닌 경우 마지막으로 P2P대출 중개업자가 자기자금투자를 하는 것으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P2P대출중개업자는 연계투자자와 해당 연계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sup>114)</sup> 즉, 연계투자자와 연계대출은 그 내용이 매칭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정의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P2P대출법 제12조 제7항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만기, 금리 및 금액이 매칭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마도 시장의 상황을 보고 추후 이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법시행령안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수수료 이외의 금원 요구 금지,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재산상 이익수취의 금지, 사전적 손실보전 약속 또는 사후적 손실보전 행위의 금지, 투자자에 대한 이익보장 또는 사후 이월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연체율 관리의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감독규정으로 정하게 될 상품,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금지 등을 영업행위규제로 규정하고 있다. 연체율 관리의무 외에는 일종의 부당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달리 자문행위에 대한 금지는 따로 보이지 않는데, 증권형과 마찬가지로 자문행위를 구실로 차입자에게

108) 구체적인 연체율은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09) 구체적인 비율은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10) 법시행령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111) 법시행령안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참고로, 법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일 차입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PF 대출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SPC)를 차입자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 PF 자체를 차입자로 기준으로 10%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12) 법 제12조 제6항.

113) 자기자금투자의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약속하는 것은 금지되나, 투자금이 80% 이상 모집되었을 때 자기자금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법시행령안 제11조 제1항 제3호).

114) 법 제12조 제7항.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P2P대출 제도가 가지는 대안적 중소기업금융으로서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입자에 대한 자문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15)</sup>

#### 다. 손해배상책임

P2P대출의 법적 구조를 P2P대출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대출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투자자는 P2P대출중개업자가 평가한 신용의 내용을 기초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이용자 특히,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P2P대출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투자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2P대출중개업자의 법령등의 위반이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보다 용이하게 P2P대출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P2P대출법 제31조는 P2P대출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1)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2) 업무소홀 즉,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은 P2P대출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령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2P대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소홀은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하므로,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같이, P2P대출 중개업자에게 법령등의 위반이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즉,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16)</sup> 또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된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업자와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sup>117)</sup> 그리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대출법은 중개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sup>118)</sup> 끝으로, 투자자의 손해액에 대해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투자자가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19)</sup>

115)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요하므로 무등록 투자자문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대가의 수취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유형의 투자자문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만약 P2P대출에서도 투자자문을 금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업으로서 영위하는가와 상관없이 이를 금지하여 원천적으로 자문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16) 법 제31조 단서.

117) 법 제31조 제2항.

118) 법 제31조 제4항.

119) 법 제31조 제3항. 법시행령안 제26조는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다만, 소송보다는 우선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동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제38조의 감사 대상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도 포함된다.<sup>120)</sup> 따라서 P2P대출법 제44조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자도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상이므로, 이용자와 P2P대출중개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

#### 가. 차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확인과 투자자에게 대한 정보제공 의무

P2P대출은 한면은 투자자와 중개업자가 접촉하는 자본시장(직접금융시장)의 성질을 가진다. 직접금융시장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비대칭성의 완화를 위한 공시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적절한 공시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P2P대출법도 이와 유사하게 P2P대출중개업자가 차입자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확인·심사 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자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한 자본시장법과 달리 간접대출형을 취하는 P2P대출법은 공시의 책임자를 차입자가 아니라 차입자의 정보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심사한 P2P대출 중개업자로 위치시키므로,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할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내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규정한다. 이는 부실한 정보확인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차입자가 아니라 P2P대출중개업자가 지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P2P대출중개업자의 법령위반을 최소화시키고 P2P대출중개업자가 스스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고려와 전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과 관련하여, 법시행령안은 해당 P2P대출중개업자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sup>121)</sup>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타 P2P대출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P2P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면, 돌려막기나 경영상황이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용자 중 차입자에 대한 손해에 대한 추정 규정은 두기 어려우므로 투자자의 손해액 추정 규정만 둔 것으로 보인다.

120) 금융위원회설치법 제38조 제9호.

121) 법시행령안 제19조 제2항 제4호.

어려운 P2P대출중개업자가 부실기업 등을 연계대출상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2P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야 하고, 투자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 정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sup>122)</sup>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10)과 관련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공시내용 중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P2P대출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P2P대출법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서 규정하는 10일간의 최소청약 기간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는 대신 특정한 연계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투자금의 모집 개시 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sup>123)</sup> 사전 공시가 필요한 연계투자 상품은 (1)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즉, 부동산 PF 상품과 (2) 부동산 PF 상품을 제외한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이다.<sup>124)</sup> 따라서, 이 두 유형의 상품을 제외한 신용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선공시 의무가 없다. (2) 유형의 담보형 P2P대출은 담보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채권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유형의 담보형 P2P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담보형 중에서는 일반 신용대출상품보다 안전한 상품도 존재하므로 굳이 신용대출상품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2)는 (1)을 제외한 연계대출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집 전 선공시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감독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sup>125)</sup>

한편, P2P대출중개업자는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26)</sup> “투자자의 합리적인

122) 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이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23) 법 제21조 제2항.

124) 법시행령안 제20조 제1항.

125) 법시행령안 제20조 제2항.

126) 법 제22조 제4항.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문구이며, 자본시장법은 이를 중요사항이라고 하는데, P2P대출법에서 해당 법문에 대한 해석도 자본시장법의 해석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는데, P2P대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P2P대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p2p대출중개업자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영업일로 규정한 것은 연체 사유를 확인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투자정보이므로, 연체 사실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한 익영업일에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그 사유는 5영업일 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나.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1)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P2P대출중개업자와 투자자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와 같이, P2P대출 중개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시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sup>127)</sup> 다만, 예외적으로 (1)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sup>128)</sup>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나,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연계투자설명서 등의 계약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P2P대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동투자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일정 정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 중개업자에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철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언제든지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sup>129)</sup> 이 경우 P2P대출중개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연

127) 법 제23조 제1항.

128) (1)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의 기간, (2) (1)의 기간 중 총 투자금액, (3) 연계투자 상품당 투자금액, (4) 개별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최대 투자금액, (5)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중단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연계투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129) 법 제23조 제3항 및 법시행령안 제21조 제3항.

계투자계약의 신청철회권과 투자금의 반환의무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회사 철회신청과 관련하여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기술한 바와 같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최소청약기간의 규정이 있으므로, 모집의 완료는 모집기간 종료 이전의 모집 목표금액의 도달이 아니라 모집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모집금액의 도달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집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P2P대출법령에서는 이를 목표금액의 도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P2P대출 중개업자가 모집기간을 설정하고, 모집기간 중에는 목표금액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집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증권형과 같이 모집의 완료는 모집기간의 완료 이후 목표금액이 모집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에서도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P2P대출법은 P2P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수수료 등 부대비용,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시 이 내용을 차입자에게 서명하여 차입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sup>130)</sup> 그리고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 대리인은 P2P대출 중개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시행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sup>131)</sup>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sup>132)</sup>

### 다. 연계대출한도 및 연계투자한도 규제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위험상품으로 보고, 발행인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연간 자금의 양과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총 투자금액의 양을 제한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위험상품의 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다시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양도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JOBS법 제Ⅲ편에 의해 구현된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기본적 법리를 본받은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P2P대출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원리금수취권으로 명명된 투자자의 권리는 사실상 채무증권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데,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고, 정해진 이자를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만기가 없고 신생기업의 경우 배당도 기대할 수 없는 주식에 비해 그 위험도가 상대적

130)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131) (1) 차입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주고받은 내역 및 (2)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함)이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의미한다(법시행령안 제22조 제3항).

132) 법 제24조 제4항.

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2P대출에서는 대출한도나 투자한도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sup>133)</sup> 다음의 <표 4>에서와 같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등에서도 대출한도를 두고 있고, <표 5>에서와 같이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P2P대출에서도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 P2P대출 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양자를 두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한도 규제와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해외 주요국의 P2P대출 대출한도 현황<sup>134)</sup>

국가	대출한도 규제
영국	규제 없음
미국	규제 없음
중국	개인 ¥20만(3.3천만원), 총 합산 ¥1백만(1.6억원) 법인 ¥1백만(1.6억원), 총 합산 ¥5백만(8.2억원)
프랑스	프로젝트당 €1백만(약 13억원)
스페인	프로젝트당 연간 €2백만(약 26억원)
포르투갈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5백만(약 65억원) 프로젝트당 연간 €1백만(약 13억원)

<표 5> 해외 주요국의 P2P대출 투자한도 현황<sup>135)</sup>

국가	투자한도 규제
영국	규제 없음
미국	주별로 규제가 상이 * Idaho, New Hampshire, Oregon, Virginia, Washington 등 - 투자자 요건: 연간 총소득 \$7만 및 순자산 \$7만 이상 또는 순자산 \$25만 이상 - 투자한도 제한: 순자산가치의 10% 초과 투자 금지
중국	규제 없음
프랑스	개인투자자: 건별 한도 €1천(약 130만원)
스페인	일반투자자 - 건별 한도 €3천(약 130만원), 연간 한도 €1만(약 1,300만원) 적격투자자 한도 없음 * 가. 기관투자자, . (법인) 자산 €1백만 또는 매출, €2백만 또는 자본 €3십만 이상 다. (개인) 연 수입 €5만 또는 금융자산 €1십만 이상
포르투갈	개인투자자(증권형과 동일) - 건별 한도 €3천(약 130만원), - 연간 한도 €1만(약 1,300만원)

133) 과도한 규제의 개입이라는 점 등에서 대출한도나 투자한도를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유주선·강현구,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법조 2018. 2(vol. 727), 379면 참조.

134)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자료, 24면.

135)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자료, 24면.

## 1) 연계대출한도

우선, P2P대출법 제32조 제1항은 차입한도라는 용어 대신 대출한도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등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중개업자별로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P2P대출중개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sup>136)</sup> 법시행령안에서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동일 차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sup>137)</sup> 즉, 차입자는 P2P대출중개업자별로 해당 P2P대출중개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연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권형이 연간 총 15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한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P2P대출법에서의 연계대출 한도는 연간이 아니라 특정 차입자에 대한 총 대출한도이므로 특정 P2P대출중개업자만 놓고 보면 한도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P2P대출에서는 P2P대출중개업자별로 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에 비해서는 한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2P대출을 통해 부여되는 원리금수취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외에는 정책적 이유를 제외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술한 연계대출 한도에 대한 예외로서, (1) P2P대출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및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가 21억원 이하인 경우<sup>138)</sup>, (2) P2P대출중개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sup>139)</sup>

## 2) 연계투자한도

개인인 일반투자자가 P2P대출을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차입자별로는 총 5백만원이며, 총 투자한도는 5천만원이다. 다만 부동산 PF 대출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상품의 경우 총 투자한도 3천만원이다.<sup>140)</sup> 현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총 투자한도가 아니라 중개기관별로 1천만을 투자할 수 있고, 비부동산관련 상품의 경우에는 2천만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P2P대출법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전체 투자한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개기관별이 아닌 총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136) 법 제32조 제1항.

137) 법시행령안 제27조 제1항.

138) 왜 이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139) 법 제32조 제1항 각호 및 법시행령안 제27조 제2항 내지 제5항.

140) 법시행령안 제27조 제6항 제2호.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 규제 방식과 유사하나, 대출한도에서와 같이 증권형은 연간 투자한도임에 반해, P2P대출에서의 투자한도는 개인인 일반투자자가 P2P대출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총 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적격투자자<sup>141)</sup>에 대해서는 차입자별로 총 2천만원은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를 높이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하게 전문투자자<sup>142)</sup>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P2P대출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한도 규제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P2P대출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와 법인이 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후술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규제에 따라 법인과 개인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완전히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143)</sup> 이상의 투자한도 규제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P2P대출 중개업자는 이상의 연계대출한도와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연계대출액에 대해서는 연계대출의 규모가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연계투자액에 대하여는 연계투자의 규모가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연계투자 전에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부터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144)</sup>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대출한도 또한 관련 정보가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집적될 예정이므로, 대출한도의 준수 또한 중앙기록관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하는 실무가 정착되리라 예상된다.<sup>145)</sup>

**<표 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및 P2P대출 투자한도 비교<sup>146)</sup>**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P2P대출가이드라인	P2P대출법
한도관리 기준	투자자 기준	개별 중개업자 기준	투자자 기준
일반투자자	발행인별 5백만원 연간 총 1천만원 -법인 포함	대출상품별 5백만원 중개기관별 1천만원 - 비부동산대출은 1천만원 추가	차입자별 총 5백만원 총연계투자한도 5천만원 -단 부동산대출은 3천만원
적격투자자 <sup>1)</sup>	발행인별 1천만원 연간 총 2천만원	대출상품당 2천만원 중개기관별 총4천만원	차입자별 총 2천만원 총연계투자한도 1억원
전문투자자 <sup>2)</sup>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모든 법인은 한도제한 없음	차입자별 모집금액의 40% 이내 총 연계투자한도 없음 <sup>3)</sup> ※모든 법인은 한도제한 없음

141)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법시행령안 제27조 제6항 제1호).

142) 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법시행령안 제27조 제7항).

143)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144) 법 제32조 제3항 및 법시행령안 제27조 제8항.

145) 이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한도관리 실무이다.

146) 조용복,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0. (민병두 의원안 심사보고서), 29면의 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 1) 개인: 금융소득 2천만원, 근로·사업소득 1억원 등, 법인: 자기자본 10억원
- 2) 개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법인: 100억원 이상(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
- 3) P2P대출법상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의미

끝으로, 시행령안 부칙 제1조는 투자한도관리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P2P대출법 제32조 제2항 및 제33조에 대한 사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선정 및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P2P대출법의 시행일인 2020년 8월 27일보다 약 9개월 이후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2P대출법의 시행과 더불어 대출한도 규제는 곧바로 시행되나, 투자한도 규제는 9개월간 규제공백 상태로 있게 된다. 규제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투자한도에 한정하여 법상 투자한도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연장토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상의 투자한도 정도는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특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따라 은행의 대출여력이 약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P2P대출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안적 대출 경로로 작동하였고, 영국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P2P대출을 통해 집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10년 이후 P2P대출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는 자금 여력이 많은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영미의 P2P대출시장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sup>147)</sup> 이에, 업계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여신기관 등이 P2P대출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P2P대출법은 이를 수용하여 법 제35조에서 투자한도와 영업행위규제 등을 포함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우선, 대부업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여신금융기관과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sup>148)</sup>는 <표 7>의 한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sup>149)</sup>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전문투자자와 법인은 연계투자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한도규제를 받지 아니하나, P2P대출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모집금액의 40%한도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한도이므로, 여전히 총투자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한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표 7>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

	부동산 PF 또는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그 외 상품
대부업법상 여신기관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20%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법인 및 개인전문투자자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147) 영국에서 P2P대출시장에 개인투자자가 적은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규범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안전한 은행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Vincenzo Bavoso, 앞의 논문, 각주 45 및 각주 195가 있는 좌단 참조).

148) 법시행령안 제30조 제1항.

149) 법시행령안 제30조 제2항.

P2P대출중개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투자자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전에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인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들의 투자한도가 <표 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연계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P2P대출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인 경우 자신이 여신금융기관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사항과 투자한도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sup>150)</sup> 이 같이 개인전문투자자나 법인투자자가 아닌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 수준이 보다 강하게 설정된 것은 모집금액에 대해 여신금융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는 여신금융기관이 P2P대출을 새로운 신용공여 채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신용을 공여할 때에도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보다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신기관은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에 20%까지는 투자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P2P대출중개업자가 다섯 개의 여신기관을 모집하여 특정 대출상품을 P2P대출을 통하여 투자함으로써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2P대출법은 일종의 공정공시 사항이자 영업행위규제로서, P2P대출중개업자에게 P2P대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여신금융기관등에게 먼저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sup>151)</sup> 이 같은 영업행위규제에 따라 여신기관등만을 우대하여 P2P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부당행위 내지 불공정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서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에 있어 자신이 인허가 등을 받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신용공여나 대출액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P2P대출을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의 준수와 관련하여 P2P대출에서는 투자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므로,<sup>152)</sup> 해당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라.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와 그 방법

국내와 달리 영미의 대출시장에서는 대출채권 유통시장이 잘 발달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출채권의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권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는 대출채권 유통시장의 참여자가 모두 은행 등의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권리의 유통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증권규제의 적용을 하지 않거나 특

150) 법 제35조 제2항 및 법시행령안 제30조 제3항.

151) 법시행령안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152) 법 제35조 제3항.

별한 규제를 두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질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에 상관없이 원리금수취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유통시키는 경우 원리금수취권의 증권성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간주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 원칙과 유사한 규제를 P2P대출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P2P대출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sup>153)</sup>, 일반투자자들에게 원리금수취권이 전전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 시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선, 원칙적으로 원리금수취권은 양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1) 개인전문투자자, (2) P2P대출중개업자를 제외한 법인투자자, (3) 적격투자자, (4) 일반개인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sup>154)</sup> 즉, 이 네 가지 유형의 전문투자자 등만이 적격양수자이며, 이들을 제외한 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둘째,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만 한다.<sup>155)</sup> 따라서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당사자들끼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과 유사한 매매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석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그 민사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P2P대출중개업자는 위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시행령안 제29조 제2항은 P2P대출중개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P2P대출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2) P2P대출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고,<sup>156)</sup> (3) 양수도 계약의 체결 전에 P2P대출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차입자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4)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인이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은 유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차입자의 계속공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P2P대출중개업자가 확인하였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입자가 이를 P2P대출중개업자에게 알려야만 P2P대출중개업자가 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간접적으로 변동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P2P대출중개업자에게 알려야만 하는 계약 구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P2P대출을 통한 대출채권의 만기가 통상 1년 내외이므로 실제 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가 변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3) 실제 법시행령안의 제정과정에서 이점을 인식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이는 필자의 추측임을 밝힌다.

154) 법 제34조 제1항 및 법시행령안 제29조 제1항.

155) 법 제34조 제2항.

156) 여기서 왜 양도인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 4. 관련 인프라

### 가. 예치기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청약기간(모집기간) 동안에만 투자자의 청약대금이 관리되고,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발행회사와 투자자간 직접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배당금, 수익, 이자 등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P2P대출에서는 자동투자 등의 목적으로 투자자가 투자금과 상환받은 원금 및 지급받은 이자가 상당 기간 동안 P2P대출중개업자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투자금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에 준하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P2P대출법은 우선 투자금등(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자기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의 방법으로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한다.<sup>157)</sup> P2P대출중개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 누구든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고, P2P대출중개업자가 합병되거나 타기관에서 P2P대출중개업자의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수 받은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58)</sup> 그리고 P2P대출중개업자에게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P2P대출중개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up>159)</sup> 이점 청약대금관리기관이 직접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설계된 증권형과 차이가 있다.

### 나. 대출채권관리기관

P2P대출법은 제28조에서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도산격리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P2P대출중개업자를 1차적 대출채권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sup>160)</sup> 보다 구체적으로 P2P대출중개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sup>161)</sup>

그러나 P2P대출중개업자는 자신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157) 법 제26조 제1항.

158) 법 제26조 제2~3항 및 범시행령안 제24조 제3항

159) 법 제26조 제4항.

160) 법 제27조 제1항.

161)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법인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sup>162)</sup> 즉,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는 P2P대출중개업자는 자신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영업중단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리금의 상환·배분 업무 등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는 계획 등의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을 받은 법무법인등(수탁회사)은 P2P대출중개업자의 영업중단 등의 경우 (1)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 (2)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업무,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업무, (4)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업무, (5) 그 밖에 앞에서 언급한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탁기관으로서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63)</sup> 그런데 청산업무의 처리절차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원래 청산업무의 처리절차라는 용어는 2019년부터 시행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 2.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 ⑩항목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이라는 표제하에, “부도·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추심 및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을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P2P대출법 제27조 제4항은 이를 확장하여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소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청산업무의 처리절차라는 문구를 해산결의나 파산선고 이후의 법적 청산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27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등록취소 등 영업을 중단하게 만드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문언만으로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제27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청산은 좁은 의미의 청산이 아니라 P2P대출중개업자가 열거된 사유 등으로 영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여 업무를 정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굳이 법무법인이나 법시행령안에서 예정하는 회계법인<sup>164)</sup>만이 원리금의 상환 및 배분,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 이러한 업무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법무법인 등을 기본적으로 상정한 것은 아마도 파산절차 등에서 파산과 관련된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야 위에서 열거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정한 것으로 추측되나, 파산이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원리금의 상환 및 배분 업무 등은 법무법인 등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P2P대출중개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열거된 업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할 때, 이점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보다 넓게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법무법인 외에도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회

162) 법 제27조 제4항.

163) 법 제27조 제4항 및 법시행령안 제25조 제1항 각호 참조.

164) 법시행령안 제25조 제2항은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을 규정하고, 감독규정에서 추가적으로 수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를 열거하고 P2P대출중개업자가 이 중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기본적으로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를 관리하는 인프라기관이다. 그런데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이 같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중개업자가 영업을 중단한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대신하여 발행회사의 계속공시와 관련된 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게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sup>165)</sup>

P2P대출법에서 규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존재이유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P2P대출에서의 중앙기록관리기관도 기본적으로 투자한도 관리를 지원하고, P2P대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계대출 신청과 연계투자 신청의 내역 등을 집적하여 관리<sup>166)</sup>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 IV. P2P대출과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 쟁점

#### 1. 포트폴리오 상품(유사펀드상품)의 제조와 판매 실무에 따른 쟁점

##### 가. 실무 현황

정확하지는 않으나, 2016년 경부터 P2P대출 중개업자들은 개인신용대출상품이나 부동산대출상품 등에 대해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차입자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그룹화 하여 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미 상당수 이러한 투자상품이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유사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차입자의 차입 목적이나 투자위험 등을 점검할 필요 없이 P2P대출중개업자가 평가한 위험치와 제시한 금리만 확인하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차입자에게 분산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16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상세는, 천창민 외 4인, 앞의 보고서, 231~237면 참조.

166) 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시행령안 제28조 참조.

있다. 차입자 입장에서든 투자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P2P대출중개업자 입장에서든 모듈화된 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집할 수 있고 그 결과 영업성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보다 모듈화된 상품을 제공할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듈화된 포트폴리오 대출상품은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고, 무엇보다 이러한 상품의 제조 및 판매가 은행법상 은행업이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또는 자산유동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법 제3조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인 원리금수취권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러한 모듈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집합투자 행위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요하게 되므로 이 같은 모듈상품의 제조 및 판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검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풀링하여, 그들로부터 일정한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증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그 투자의 결과물을 배분하는 행위를 말한다.<sup>167)</sup> 그런데 P2P대출에서 모듈화·표준화된 상품의 제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과 유사한 행위이고, 집합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동 행위는 은행법 제2조가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 수취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P2P대출법 제3조 제4항은 원리금수취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이상 투자자매매업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또한 법 제3조 제1항에서 은행업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대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집합투자의 개념은 증권투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수취권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하여 집합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P2P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지시없이 투자대상자산(대출채권)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집합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P2P대출상품이 일반 펀드상품과 다른 점은 일반 공모펀드는 구체적인 투자대상 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한 후 미리 제시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용을 하는 반면 포트폴리오 P2P대출상품(유사펀드상품)은 미리 특정 투자대상 상품을 제조한 후 이에 투자한 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7)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상품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과, 이를 인정할 경우 어떻게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철학에 비추어 유사펀드상품인 포트폴리오 대출상품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상품으로 투자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특히, 5억원의 최소 자기자본으로 충분하지 못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P2P대출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복수의 대출상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당연히 높은 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품을 인정한다고 할 경우 그 진입요건에 대한 새로운 설계와 자기자본규제나 인적요건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및 보다 투명한 공시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P2P대출법과 법시행령안에는 그러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상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68)</sup> 만약 향후 포트폴리오 상품을 인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P2P대출중개업자에 한해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할 경우 명확성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배제가 필요하며, 그와 더불어 보다 엄격한 영업행위규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자동투자 실무

### 가. 실무 현황

포트폴리오 상품의 등장과 더불어 P2P대출 중개업자들은 상품의 모듈화·표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일정 조건 특히, 금리 및 위험성향이 미리 설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특정 주가에 도달하면 지정한 금액이나 주식수만큼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주문을 예약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식은 매수 및 매도를 자동예약할 수 있는 반면 P2P대출에서는 상품의 성격상 매수(투자)만 자동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 주식의 매도·매수에 관한 자동주문은 제3자의 상품을 중개해 주는 것인 반면, P2P대출에서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심사하여 중개하는 대출상품을 자동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자동투자는 해석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일임에 해당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과 더불어 투자일임업 등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68) 금융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향후 감독규정의 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한 규정에서 이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 나. 검토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sup>169)</sup>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의2에서 열거하는 것에 한정되는데, P2P대출 연계투자 상품이 열거된 목록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투자일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투자일임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것이나, 제6조의2 제4호 다목에서 말하는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 사건으로는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의2 제4호 다목에서 말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일견 자동투자는 투자대상 상품에 대한 결정을 P2P대출중개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P2P대출상품에 대한 투자의 중요 요인은 위험성과 이자율이고, 그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하는 것이며 P2P대출중개업자는 자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P2P대출중개업자는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투자판단의 중요 결정은 일임이 없이 본인이 직접 내리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투자는 투자일임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안은 기술한 바와 같이 일임과 유사한 측면 속성을 가진 자동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자동투자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자동투자나 앞서 검토한 포트폴리오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P2P대출도 그 출발이 크라우드펀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70)</sup> 크라우드펀딩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금제공자와 수요자의 대화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상당수의 P2P대출 플랫폼에서도 대화채널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2P대출법도 대화채널과 관련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대화채널의 필요를 단절시키는 자동투자나 포트폴리오 상품의 제조 및 판매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에서는 발행인과 투자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이 제공되는 것을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할 정도로 대화채널과 이를 통한 소통을 크라우드펀딩의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sup>171)</sup> 이는 대화채널을 통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고,

169)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170) 필자의 글읽기가 부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업계의 일부 주장을 제외하고 학술논문에서 P2P대출이 크라우드펀딩의 한 종류임을 부인하는 논문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171)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법 제9조 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대화채널의 존재로 인해 발행인도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낮아진다는 것에 기초하여 기존의 증권규제를 완화할 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P2P대출 실무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동투자나 모듈화된 포트폴리오 대출상품의 판매는 차입자와의 대화 자체를 단절시킴으로써 P2P대출이 원래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 점에서 규제 수준이나 규제완화의 논리 등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 3. 광고채널을 통한 연계대출상품의 판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몇몇 P2P대출업자가 카카오페이나 토스, 핀크와 같은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업체의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넘어 해당 광고플랫폼에서 직접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즉, 판매행위까지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제조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대출상품이 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 타 금융업을 영위하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계약체결)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증권형에서는 주식, 채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위험성을 감안하여 외부 광고시 단순 링크 등만 가능하도록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즉, 증권형에서는 광고 자체부터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P2P대출 실무에서는 광고는 물론 계약의 체결 즉, 판매행위까지 타 매체를 통하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범시행령안은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을 P2P대출중개업자의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동 업무의 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P2P대출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27일부터 현재와 같이 광고를 위장한 위탁판매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현 개정 가이드라인도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이미 “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P2P 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P2P 대출 상품명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을 병기하고, 해당 상품이 P2P 대출 상품인 점, 해당 타사는 광고업체이며 투자관련 계약 진행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진행된다는 점,<sup>172)</sup> 현재 P2P 대출 상품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광고를 위탁한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계약체결은 여전하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P2P대출법령에서 광고 채널을 통한 위탁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된 이상,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

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 제5장(제118조의13 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 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 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172) 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정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미리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안내와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V. 맺음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기술과 금융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P2P대출은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로서 여러 핀테크 유형 중 대안금융으로서 가장 빠르게 일반 대중의 실생활에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는 2007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여러 유형의 크라우드펀딩 중 처음으로 P2P대출이 소개되었고,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적절한 규범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자회사를 통한 기형적인 모습의 P2P대출시장이 일반적인 모델로 정착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P2P대출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바로 잡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간접적 감독으로는 훌쩍 커버린 P2P대출시장을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입법을 청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5개의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국회도 푸른 봄의 열정으로 새로운 금융혁신을 창출하고자 하는 업계의 염원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P2P대출법은 국회에 제출되었던 5개의 법안을 절충하고, P2P대출이 가진 여러 특징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용자인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을 새로운 금융으로 승인하기 위해 간접대출형으로 그 구조를 설계하고, 단순한 증권발행의 중개에 그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달리 직접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는 등 P2P대출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중개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자로서 그 지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증권형과는 달리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P2P대출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P2P대출만을 위한 단독법률이라는 점과 타 금융업의 높은 규제 수준을 반영하여 그 규제 수준이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시장의 발전 정도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규제적 대응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글이 그러한 대응과 논의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족하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맺는다.<sup>173)</sup>

173) 이 글에서 논의하지 못한 P2P대출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나 논의가 미흡한 점 등은 추후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강영기, “일본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 고동원, “P2P 대출 거래의 유형과 법적 쟁점”, P2P 금융과 법.
- 구정한·이규복,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7. 10.
-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P2P 대출 관련 민원 분석, 2018. 10.
- 금융감독원,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2019. 11. 7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2018. 11. 20 보도자료.
- 금융기술법연구회 편, 『P2P 금융과 법』, 박영사, 2019.
-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 1. 2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2019. 1. 3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9. 10. 31.
-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 12. 1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17.8.29일부터 금융위·원 감독 개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 2017. 8. 2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 2.27일부터 시행 -, 2017. 2. 27, 보도자료.
- 노태석·석지웅, “미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 매일경제/임형준, P2P법 소위 통과에 “만세” 외친 박용만, 2019. 8. 15.
- 배재권·이승연·서희진,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온라인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8. 8.
- 서울경제/이지윤, P2P 통합협회 출범 앞두고…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활동 마무리P2P 통합협회 출범 앞두고…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활동 마무리, 2020. 1. 21.
- 성희활,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 2016.
- 안수현, “독일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 유주선·강현구,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법조 2018. 2(Vol. 727)
- 윤민섭, “담보형 P2P 대출 거래”, P2P 금융과 법.
- 윤민섭, “P2P 금융의 법적 검토”, P2P 금융과 법.

이지은, “영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 P2P 금융과 법.

이지은, “P2P 대출 거래 규제의 입법안 검토”, P2P 금융과 법.

이현진,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P2P 소셜 대출 채무자 부도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20권 제7호, 2019. 7.

임정하, “P2P 대출의 법제화를 위한 과제 - 금융포용과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금융소비자연구 제9권 제1호, 2019년 4월호

정대, “영국의 핀테크산업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거래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제17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조용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0.

조용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0.

조용복,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0.

조용복,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0.

조용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9. 10.

천창민, 온라인 주식서 자본시장법, 전면개정 제2판, 로앤비/온주, 2019, 제9조 제27항 및 제117조의3~제117조의16.

천창민 외 4인,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18. 3.

최문희, “독일의 핀테크(Fintech)의 현상과 규제 - 대출형 클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집

Vincenzo Bavoso, The Promise and Perils of Alternative Market-Based Finance: The Case of P2P Lending in the UK, Journal of Banking Regulation (2019), <<https://doi.org/10.1057/s41261-019-00118-9>>.

Vishal Virani, Fintech Innovation: How P2P Lending Is Emerging With Help Of AI?, Online <<https://www.datasciencecentral.com/profiles/blogs/fintech-innovation-how-p2p-lending-is-emerging-with-help-of-ai>>



#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노태석\*

-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P2P대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요구에 따라 P2P대출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어 2019년 11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됨
-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등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법체계로 포섭하기 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함
- P2P대출 특성상 투자와 대출 두 유형을 포괄하고 있어 기존 법체계로 규율하는데에 한계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체계로서 차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자본시장법을 통해 P2P대출을 규율할 경우 차입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P2P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에 포섭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대부업법의 경우 차입자에 대한 보호체계로서 자금제공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렵고, 특히 P2P대출은 통상의 대부중개업과 거래구조가 상이하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P2P대출방식에는 직접대출형과 간접대출형이 있는데, 직접대출형은 P2P대출업체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는 여전히 차입자에게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하나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가 다수인 P2P대출의 특성상 차입자가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을 수 있어 차입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반면 간접대출형은 차입자 보호에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P2P대출업체의 도산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 법학박사

현행 시장구조, P2P대출업무의 효율적 운영,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입자가 P2P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P2P대출업체는 원리금 수취권을 매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대출형 방식이 보다 적합하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는 간접대출형 방식을 P2P대출의 법적 구조로 설계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는 P2P대출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등록요건으로 신청인의 자격,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 설비, 임원구성, 내부통제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자본요건과 관련하여 동 법 시행령안에서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300억원 미만: 5억원/300-1,000억원 미만: 10억원/1,000억원 이상: 30억원)하고 있음
- 대출 신청정보의 확인·게재,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 상환의무 이행점검, 대출금 회수·배분, 채권추심 등 단순 중개 업무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P2P대출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3억원), 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5억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설정
- 현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는 차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나(대부업법 제11조의2), P2P대출의 경우 차입자와 투자자 양측을 모집·중개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 다만, P2P대출에 대해서만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규제(대부업법 제8조, 제15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여타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차입자 보호를 위한 최고금리 규제목적에 감안하여 차입자에 대한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산정시 간주이자에 포함하도록 함
-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대출업자)도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안 부칙 제7조제4항),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규정(대부업법 제15조) 적용되어 현행 최고이자율(27.9%)을 준수해야 하며,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됨(대부법법 제15조제5항, 제8조제4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대한 연계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사금고화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인 경우(연계대출 금액의 80% 이상, 자기자본 내)에서 자기계산으로 제한적으로 연계투자를 허용

-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여 ‘중개’로서의 P2P대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자금모집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소지도 있으나, 자기자본이 투입된 대출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기자금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위험도를 다변화한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며, 합리적 투자판단 저해 우려 문제는 공시의무 등 영업규제가 완비된다면 시장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 가능하므로 P2P대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대출모집이 일정수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내에서 보완적으로 허용. 다만, 자기자본 내 연계투자 허용을 통해 선대출 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른 일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금의 선회수 금지, 투자정보 공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업무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연계투자업무,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의 중개업무 및 원리금수취권의 가치평가업무,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제공업무 및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업무와 겸영업무(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업무, 전자금융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는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집중 위험 방지 및 과도한 P2P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를 규제하고 있음
- 대출한도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중 작은 값 이내로 제한.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제27조제1항, 제2항)
- 투자자의 과도한 P2P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도입하되, 투자자의 재산·소득 여건, P2P대출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일반개인투자자:(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5천만원/소득적격투자자:(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대출 참여를 통해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대출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안 제 30조)
- 차입자와 투자자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약관 위반, 계약서류 위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도 배상책임으로 명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손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관련 임원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가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거나 준비금 적립의무를 부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1조)
-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상품이나 자동투자와 같은 행위 등은 원칙 적으로 P2P대출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는 곤란 하므로 추후 시행령 확정 및 감독규정 제정과정에서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P2P대출업체가 아닌 금융플랫폼이 P2P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P2P대출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법 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므로 그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사)한국상사법학회 2019 동계학술대회 제4세션

# 보험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발 표 자	김준영 (변호사)
사 회 자	맹수석 (충남대)
토 론 자	한기정 (서울대)
	유주선 (강남대)

# 보험업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김 준 영<sup>1</sup>

## 1. 들어가며

물리적, 디지털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고 보수적인 산업으로 알려진 보험업에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업무 각 분야에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 Insur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과 보험업의 융합을 뜻한다)로 인한 보험업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sup>2</sup> 보험업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더라도 가장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범용성이 뛰어나므로,<sup>3</sup> 보험업에서도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대부분의 분야(상품개발, 마케팅, 가격 결정, 인수, 리스크 평가, 계약관리, 고객관리, 손해사정 및 보상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나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모두 초기 단계에 있는 지금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보험업을 어느 정도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선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다라도 앞으로 보험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간략하게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모델에 대해 생각해보자.

1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 현황' 보도자료 (2019. 5. 22.); 박소정, 박지윤,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보험연구원 (2017. 8.) 등 참조

3 저명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전문가인 Andrew Ng이 인공지능 기술을 새로운 전기(the new electricity)라고 부르면서 전기가 100년 전 거의 모든 것을 변화 시켰듯이, 향후 몇 년 이내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Andrew Ng: Why AI Is the New Electricity, Stanford Business, available from: <https://www.gsb.stanford.edu/insights/andrew-ng-why-ai-new-electricity>),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모델 (예시)〉

보험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와 같은 보험상품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군을 특정한 후 맞춤형 상품 추천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은 이러한 정보 등을 기초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고객에게 제시하며, 자동화된 계약심사를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보험회사 고객들은 인공지능 챗봇 등을 통해 손쉽게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계약 유지율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과 계약을 관리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간편하게 정보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은 이를 기초로 보험사기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보험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이며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sup>4</sup> 따라서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제도적,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더 나아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 2.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분류

먼저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1)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입장이 없고,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인공지능'은 광범위한 개념이며 특히 역사적으로 발전<sup>5</sup>해 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먼저 전제한 후 조심스럽게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sup>6</sup>

이처럼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하나의 정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오히려 혼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명확하게 정립하

4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3.항 참조

5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Stuart J. Russel, 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3d ed., 2010) pp.16-28

6 Matthew U. Scherer,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Risks, Challenge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ume 29, Number 2 (Spring 2016) pp. 359-362;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Publishing, Paris (June 11, 2019)의 공식 한국어 번역본인 OECD, 사회 속의 인공지능, OECD Publishing, Paris/NIA (2019. 11. 22.) 18-20면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publications/65040097-ko.htm>) 등

고자 시도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본고에서 다루는 '인공지능'은 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그 이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 (John McCarth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존 매카시는 인공지능을 '지능적인 기계 (특히 지능적인 컴퓨터 프로그램)를 만드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especially intelligent computer programs)'으로 정의하였다.<sup>7</sup> 그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오늘날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인공지능 교과서 중 하나로 알려진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에서는 2가지 요소, 즉 생각과 행동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인간과 객관적인 이성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기존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들을 (i) Thinking Humanly (인간처럼 생각), (ii) Acting Humanly (인간처럼 행동), (iii) Thinking Rationally (이성적으로 생각), (iv) Acting Rationally (이성적으로 행동)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면서, 이 중 주로 Acting Rationally 기준에 따라, 특정 상황, 환경에서 최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또는 불확실한 경우 최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rational agent'를 인공지능으로 상정하고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있다.<sup>8</sup> 즉,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들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인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능'과 관련된 논의로 볼 수 있고, 적어도 대부분 인공지능이 '인간이 아니면서'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명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는 “지능형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소프트웨어도 '지능형 로봇'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최근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들은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된 것'<sup>9</sup> 또는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된 것'<sup>10</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

7 John McCarthy,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revised November 12, 2007) p. 2 (available from: <http://www-formal.stanford.edu/jmc/whatisai.pdf>) ; Stuart J. Russel, Peter Norvig, op. cit., p.17

8 Stuart J. Russel, Peter Norvig, op. cit., pp.1-5

9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경진 의원 2019. 11. 21. 대표발의) 제2조 제1호

10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2019. 9. 23. 대표발의) 제2조 제1호

基本法)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인공적인 방법에 의한 학습, 추론, 판단 등의 지적 기능의 실현과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 실현된 해당 기능의 활용에 관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sup>11</sup> OECD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인간이 정의한 목표의 집합에 대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2</sup>

이처럼 인공지능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실제로 앞으로 살펴볼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서도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여러 유형의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특정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최대한 넓게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처럼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 (2) 인공지능의 분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보험업에 활용하는 경우의 법률적인 이슈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유형들을 살펴본 후 이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인공지능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먼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 (Deep learning) 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개념 간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대체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이자 하나의 분야로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아서 사무엘 (Arthur L. Samuel)의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 (Field of study that gives computers the ability to learn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기계)가 데이터(경험)로부터 학습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머신러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델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이 바로 딥러닝 (Deep learning)이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 정체되어 있던 인공지능을 201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주로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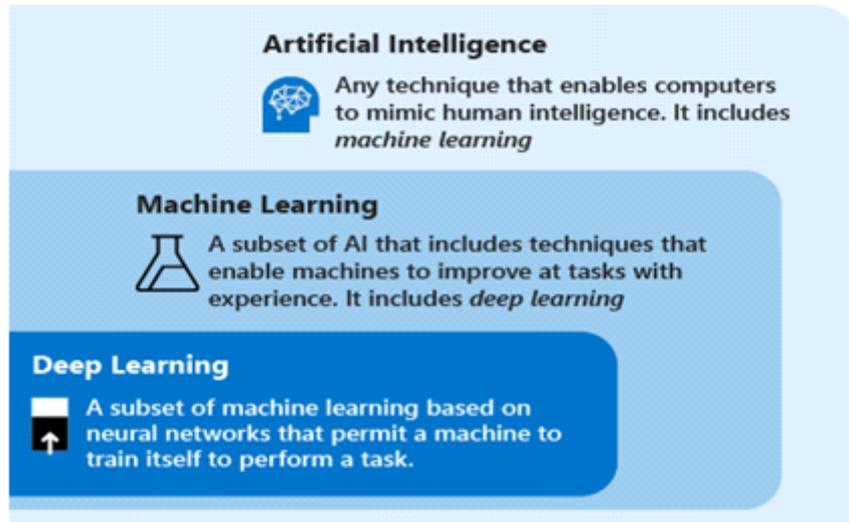
<sup>11</sup>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第二編 第二項 (available from: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8AC1000000103](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8AC1000000103))

<sup>12</sup> OECD, 사회 속의 인공지능, OECD Publishing, Paris/NIA (2019. 11. 22.) 20면

즉, 이들 개념 간 관계는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인공지능의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가 머신러닝이며, 머신러닝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가 딥러닝이라 이해할 수 있고, 개념 간 관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간 관계<sup>13</sup>



보험업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에 따른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향후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제도적,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주로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지능 수준에 따른 인공지능 유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여부가 아닌,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 수행 능력에 따라 인공지능을 분류한다면, 인공지능 유형을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지능 수준, 수행 능력에 따른 인공지능 유형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NI, weak-AI)	특정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strong-AI)	범용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super-AI)	인간보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공지능,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13 그림 출처: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machine-learning/concept-deep-learning-vs-machine-learning>

이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모두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weak-AI)이며, 인간 수준의 일반적인 지능을 갖게 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strong-AI)가 언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며,<sup>14</sup> 특히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super-AI)가 출현하는 시점인 특이점 (Singularity)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다.

과연 언제 이와 같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또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출현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법률적, 윤리적,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존재하지 않고, (비록 최근 엄청난 속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성격의 분야에 대한 지능을 동시에 보유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정되는 인공지능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 수많은 범용 분야에 대한 인간 수준의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의 출현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시급한 이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의 활용에 따른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아직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존재하지 않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까지 고려하여 논의하는 경우 현재 문제되는 법률적인 이슈를 분석함에서는 오히려 더 불필요한 혼동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수준의 권리능력 등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보다 근본적인 철학적, 법률적인 이슈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의 활용에 따른 법률적인 쟁점과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보험업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분석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유형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기로 한다.

### 3.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다양한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분야 중 본고에서 특별히 검토 대상으로 할 항목을 특정하기 위해, 먼저 보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별로 나누어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15</sup>

---

<sup>14</sup>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strong-AI) 또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super-AI)에 대한 논의와 전망, 최근 인공지능 연구 현황 등에 대해서는 Max Tegmark, *Life 3.0: Being Huma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Knopf (August 29, 2017); Melanie Mitchell, *Artificial Intelligence: A Guide for Thinking Humans*, Farrar, Straus and Giroux (October 15, 2019) 등 참조

## 1) 보험 인수, 보험료 산출, 리스크 평가<sup>16</sup>

보험업에서 인수(Underwriting)란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물의 잠재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인수 과정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어 리스크를 평가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의 한도 조정 등을 결정한다.

보험회사는 인수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 인수, 보험료 산출, 리스크 평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보험업의 핵심적인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보험업에서는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보험업 영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험회사가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의 개별 상황과 세분화된 리스크 등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sup>17</sup>

하지만 아직 공개된 국내 활용 사례를 보면 인수 등 단계에서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미리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 심사를 자동화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i) 계약심사자의 별도 추가 확인 없이 곧바로 승인하는 가벼운 질병 유형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산 심사만으로 계약심사자의 별도 확인 없이 가입이 가능한 유형에 대해 곧바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 (ii) 사업장 및 제품에 대한 수많은 사진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가입설계 시 설계사가 사진만 찍어 전송하면 계약자 사업장 제품을 판독하고 업종을 알아서 판단하여 보험료를 산출해주고 사업장의 관리 상태까지 확인해 자동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사례, (iii) 자연어처리 기반 인공지능 언더

15 이하에서는 주로 국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등을 소개한다. 국내 활용 현황과 관련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원영,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8. 6. 18.);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 현황' 보도자료 (2019. 5. 22.); 박소정, 박지윤,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보험연구원 (2017. 8.) 등 참조. 해외 동향에 대해서는 Martin Eling, Martin Lehmann,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the Insurance Value Chain and the Insurability of Risk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Issues and Practice (Volume 43, Issue 3) (July 2018) pp.362-375, 395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Draft Issues Paper on the Use of Big Data Analytics in Insurance (September 2, 2019) pp.14-29 등 참조

16 인수, 리스크 평가 등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hite Paper of members of the IDS Association, Data Logistics and AI in Insurance Risk Management, International Data Spaces Association, pp.8-18 등 참조

17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Draft Issues Paper on the Use of Big Data Analytics in Insurance (September 2, 2019) pp.14-15, 19-24 등

라이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고객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승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거절하며,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언더라이터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장 유사한 결과들을 추려서 제공하는 사례 등이 있다.<sup>18</sup>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활용현황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고객, 모집인, 계약 속성 등을 분석하여 신규 계약의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수준이 낮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계약 정보, 신용등급, 평균 입원일수 정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계약자를 자동심사하여 검진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심사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를 예시로 드는 등 대부분의 공개된 활용 사례는 계약심사를 일정 부분 자동화하여 계약심사 과정에서의 시간 및 비용을 단축 내지 절감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향후에는 이처럼 기존 인수 과정을 자동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과 같이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2) 보험 판매

현재도 보험 판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은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계사 등 기존 판매채널을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0</sup>

특히, 보험회사들이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챗봇(chatbot) 활용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챗봇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보험상품 및 서비스 소개, 보험계약대출 및 상환 업무, 보험계약 조회 및 보험료 납입 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1</sup>

그러나 향후에는 단순히 기존 판매채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상품 안내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존 채널과 달리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2</sup>

## 3) 고객관리, 계약관리, 손해사정 및 보상 등 기타

인공지능은 보험회사의 고객관리, 계약관리 등 업무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고객 문의 사항의 문맥을 분석하여 1:1 채팅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챗봇을 활용한 고객상담 및 계약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상담 및 계약관리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sup>23</sup>

18 대한금융신문, [창간24주년특집] AI설계사가 보험가입, 심사도 척척, 2019. 11. 11.자 기사

19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 현황' 보도자료 (2019. 5. 22.) 3-4면

20 정원석, 김석영, 박정희,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2018. 12.) 59-60면

21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chatbot)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 보도자료 (2018. 8. 1.) 3면

22 Martin Eling, Martin Lehmann, op. cit., p.367

23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 현황' 보도자료 (2019. 5. 22.) 4면

손해사정 및 보상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보험금 청구 및 수리 서비스 처리 절차가 상당 부분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 및 보상 관련 조직도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보상 조직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위험 모니터링, 위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조직으로 재편되고, 보험금 지급 절차 진행 속도는 현재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sup>24</sup>

또한, 로봇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즉 이미지 및 문자(OCR) 인식, 컴퓨터 및 웹 화면 인식, 자연어 이해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원의 업무 행동(자료 검색, 조회, 입출력)을 로봇이 모방해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안내장 서류 검수, 보험증권 발행, 고객정보 입력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동화하는 방식도 보험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된다.<sup>25</sup>

#### 4) 검토 범위

이처럼 보험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며, 각각의 활용 방법에 따라 고유한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할 것이나, 본고에서 이를 전부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i)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쟁점과 (ii) 보험회사가 기존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보험업에 특유하게 발생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보험업에서 사람이 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 방식의 경우 기존 보험업을 영위하던 방식 자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과 대면하게 될 뿐 아니라 기존 판매 채널을 통한 판매와 다른 형태의 판매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6</sup>

### 4.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 관련 법적 쟁점

#### (1) 쟁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들과 기타 확보 가능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24 채원영,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8. 6. 18.) 26면

25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 현황' 보도자료 (2019. 5. 22.) 4면

26 물론 이외에도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민사 등 책임 문제 등과 같은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이슈들은 (비록 보험의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험 특유의 쟁점으로 보기 보다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책임 분담 등 일반적인 법률 이슈와 기존 법리 적용가능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쟁점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이 점, 아직까지 보험업 관련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보험 이슈 등 개별 유형별 세부적인 이슈들이나 보험 감독 차원의 기술적인 세부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보다는 보험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의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검토 범위를 이와 같이 특정하였다.

위험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해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크게 (i)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험을 세분화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 및 (ii) 인공지능이 위험 외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고객의 지급 능력이나 구매 성향, 가입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위험을 세분화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보험료(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인 보험요율)는 위험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위험이 낮으면 보험요율이 낮고 위험이 높으면 보험요율이 높은 것은 보험요율의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당연한 현상이다.<sup>27</sup> 오히려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보험료로 계약을 인수할 경우 Death Spiral 현상 (위험별로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전체 평균보험료만 부과한다면, 자신의 위험도 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저위험 가입자들은 보험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이탈하고 고위험 가입자들만 보험시장에 남는 현상) 등으로 보험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28</sup> 위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 원리상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함에서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업 법규는 보험 요율 산출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규제를 두고 있다.

### 1) 보험 요율 산출 관련 규제

먼저 보험업법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법은 보험요율이 보험상품의 가격(보험료)을 결정하는 비율로서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상부상조에 기초한 보험업이 갖는 공공성, 사회성을 근거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격 규제라는 본질상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요율의 규제가 지나쳐서 자율성, 창의성 등 시장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보험업의 공공성, 사회성을 고려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sup>29</sup>

보험업감독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요율 산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통계요율(통계요율에는 (i)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경험요율과 (ii)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인 참조요율이 있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

27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919면

28 김규동,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7. 7. 10.) 17면

29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917면

적으로 일정한 경우<sup>30</sup>에만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이와 같은 비통계요율에는 (i) 보험회사가 통계에 기초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산출한 요율인 판단요율과 (ii) 보험회사가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산출한 협의요율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비통계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으며(감독규정 제7-73조 제7항),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고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7-79조의3).<sup>31</sup>

즉, 본 쟁점과 관련된 보험요율에 대한 규제를 정리하면, (i)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통계요율을 사용하여야 하고, (ii)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비통계요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행 규제 내에서의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 산출 가능성

그렇다면, 현행 규제 내에서 위험을 세분화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현행 규제를 준수하면서 (단순히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현행 보험요율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통계요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통계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하는 참조요율이나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경험요

30 예외적으로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i) 기업성 보험 (제1호), (ii)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보험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호), (iii)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제3호), (iv) 제1호 및 제3호의 보험에 대해 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각호).

31 참고로, 보험업법 제129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4항도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보험업감독규정 규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통계신뢰도 요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통계요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비통계요율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통계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918면도 같은 취지)

을 중 어느 것을 활용하든지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된 위험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요율을 사용하는 이상 현행 규제를 준수하면서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통계요율이 아닌 비통계요율(비통계요율 중 주로 판단요율 활용 가능성이 문제 된다)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현행 규정상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없다(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단서). 또한, 예외적으로 비통계요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질의 위험'의 범위가 문제된다. 동질의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험가액, 피보험 물건 규모 등 단순한 양적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가 계약자의 사고위험 관리 체계·노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별도의 정량·정성적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 등에 반영하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이 원칙일 것이나,<sup>32</sup> 실무적으로는 판단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리스크 평가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동질의 위험' 범위를 판단함에서도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건들은 모두 동일한 요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실무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5항), 이와 같은 위험률 할증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뿐 아니라 할증 방식, 범위 등에도 제약이 많아 이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 3) 위험 세분화를 통한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 산출 허용 필요성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인공지능을 통해 위험을 세분화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지, 즉 이와 같은 방식의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험의 근간이 되는 대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위험을 세분화하고 위험 집단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요율 산출에 대한 세부 규제는 보험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

32 금융위원회,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 촉진 방안 (2018. 6.) 7-8면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결국 보험요율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도록,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도록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요율 산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업의 공공성, 사회성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성, 창의성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출되는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가 위 규제 취지에 부합하게 산출되는 이상, 반드시 통계자료를 기초로 요율을 산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할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이 위 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한 신뢰, 즉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차별적이지 않도록 설계, 운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sup>33</sup>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4)항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 **(3) 위험 외의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험 외의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는 위험 자체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현행 법규상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 통상 위험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보험요율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현상일 뿐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위험의 정도와 수준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 등 위험이 아닌 이유로 행하는 보험요율의 차별은 부당한 차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명시적으로 설사 통계요율이 아닌 비통계요율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7-73조 제7항).

따라서 현행 규제 하에서 위험 외의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고, 다음으로 과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위험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위

33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화 상품이 고객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위험률을 세분화하고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 고객별로 차등화된 요율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정원석, 김석영, 박정희,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2018. 12.) 94면

(2)항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위험 외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생각된다.

생각건대 위험과 달리 다른 요소들(예를 들어, 고객의 지급 능력이나 구매 성향, 가입 의지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화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 등에 따라 특히 고객이 다른 보험상품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된 능력, 기회, 시간 등이 고려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와 같이 위험 외의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할 충분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과연 해당 보험료가 위험을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 그와 같은 방식의 인공지능 속성상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4)항에서 논의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방안(투명성, 추적가능성, 설명가능성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방안에 대한 모색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 세분화를 통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통계요율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 등 현행 요율 관련 규제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지 여부는 정책적,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한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하에서는 큰 틀에서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을 허용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살펴보겠다.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새롭고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을 도입함에 따른 쟁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이다. 특히 기존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예측하거나 고려하지 못했던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현실과 규제의 괴리로 인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여부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나, 통상적으로 기존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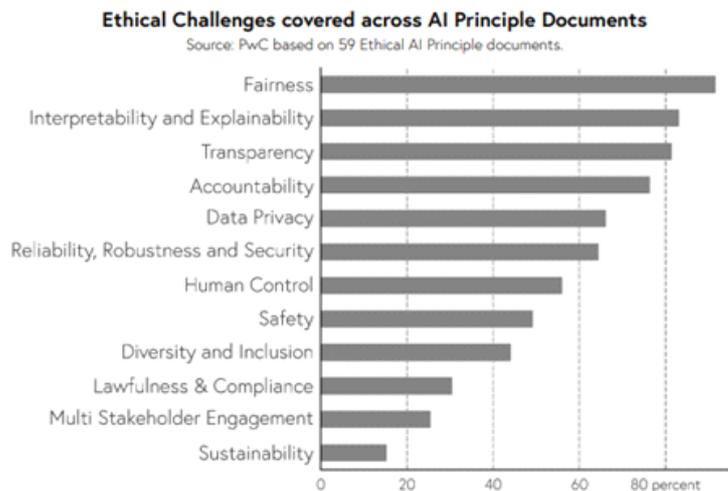
<sup>34</s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Draft Issues Paper on the Use of Big Data Analytics in Insurance (September 2, 2019) pp.19-21; Rick Swedloff, The New Regulatory Imperative for Insurance,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61, No. 5 (March 4, 2019) pp.26-39

정한 기술이나 방법론을 정하는 세부 규정을 두기보다는(rule based approach), 준수해야 할 원칙 위주로 정하면서(principle based approach),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이 산출된 보험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특히 보험계약자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위험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는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고민함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활용하면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항목



인공지능 관련 활동과 발전을 추적하기 위해 수행되는 주요 비영리 프로젝트인 AI Index팀에서 발표한 AI Index 2019 annual report에 따르면, 위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공정성(Fairness),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등으로, 각 주제는 전체 59개 원칙 중 80% 이상에서 다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발표한 원칙 중 92%가 위 주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sup>35</sup>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에 따른 판단은 인간이 개입하여 판단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나 인공

35 Raymond Perrault, Yoav Shoham, Erik Brynjolfsson, Jack Clark, John Etchemendy, Barbara Grosz, Terah Lyons, James Manyika, Saurabh Mishra, and Juan Carlos Niebles, “The AI Index 2019 Annual Report”, AI Index Steering Committee, Human-Centered AI Institute, Stanford University (December 2019) pp.148-149 (available from:

[https://hai.stanford.edu/sites/g/files/sbiybj10986/f/ai\\_index\\_2019\\_report.pdf](https://hai.stanford.edu/sites/g/files/sbiybj10986/f/ai_index_2019_report.pdf))

지능의 알고리즘 자체는 인간의 편향(Bias)을 반영하게 되므로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편향을 자동화, 객관화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머신러닝,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은 그 편향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편향을 갖고 차별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의사결정 속성상 해당 인공지능의 판단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밝히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으며,<sup>36</sup>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등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머신러닝, 딥러닝의 경우 학습 과정을 거쳐 개발된 인공지능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경우, 설계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최종 판단이 나왔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지능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블랙박스(Blackbox)'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공지능의 해석가능성, 설명가능성, 투명성이 더 중요하게 요구되며, 특히 인공지능의 판단이 여러 사람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책임 문제가 민감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인공지능의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 해석과 설명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측면에서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보험사업자의 입장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에 사용된 변수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sup>37</sup> 이 때에도 적절한 감독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였는지를 해석, 설명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성, 해석가능성, 설명가능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이나 알고리즘에 대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거나,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설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사후적으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일일이 검증하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기술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게 될 우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적절한 수준의 공정성, 해석가능성, 설명가능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Trustworthy AI)을 개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원칙들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6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59-63면

37 이희옥, 빅데이터 환경에서 보험업법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2호 (2019. 8.) 148면; 채원영,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8. 6. 18.) 26면

한국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기본원칙으로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차별 금지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체계와 작동방식이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인간의 신체, 자유, 재산 및 기타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하였을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예측, 추천 및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시스템상의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차별 금지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 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술 사용에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 및 알고리즘 실행 등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38</sup>

미국은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게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뢰성을 더 높여 인공지능의 폭넓은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고 있다.<sup>39</sup> 또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및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확성, 객관성, 안전성 등과 함께 설명가능성이 이와 같은 신뢰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표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서 인공지능에 내재될 수 있는 편향을 찾아내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40</sup>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인공지능의 편향 가능성에 주목하여 특히 금융, 법률 분야와 같이 개인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편향 가능성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설계함에 있어 어떠한 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결과를 외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41</sup>

38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보도자료 (2019. 11. 11.) (available from: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27584>)

39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9 Update, Select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June 2019) pp. 19-26

40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Leadership in AI: A Plan for Federal Engagement in Developing Technical Standards and Related Tools (August 9, 2019) pp.8,19 (available from: [https://www.nist.gov/system/files/documents/2019/08/10/ai\\_standards\\_fedengagement\\_plan\\_9aug2019.pdf](https://www.nist.gov/system/files/documents/2019/08/10/ai_standards_fedengagement_plan_9aug2019.pdf))

EU도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통해,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은 관련 법규를 존중하고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며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환경 측면까지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투명성 요소와 관련하여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설명가능성과 함께, 이용자들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의사소통(Communication)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의 예시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sup>42</sup>

일본에서도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人間中心のAI社会原則)'을 수립하여 공정성, 설명책임 및 투명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차별 및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AI 설계 시 인종, 성별, 국적, 연령, 종교 등 다양한 배경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해야 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의 취득 방법과 사용 방법, 동작 결과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구조 등에 대한 용도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설명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3</sup>

OECD도 'OECD 인공지능 원칙 (The OECD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공정성과 함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sup>44</sup> 최근 보고서에서도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시도와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sup>45</sup>

200개국 이상에서 참여하는 보험규제기관, 감독당국 전문가들의 협의체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도 규제당국 입장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편향을 최소화한 알고리즘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46</sup> 그 외에도 여러 국제적인 협의체에서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차별이나 편향

41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ise of the Machin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rowing Impact on U.S. Policy, Sub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September 2018) pp.10-11

42 European Commission,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t up by the European Commission (April 2019) pp.6-7, 12-22, 28-30

43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2019) 19-21면; 원문은 人間中心のAI社会原則,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推進会議決定 (平成31年3月29日) p.11 (available from: <https://www8.cao.go.jp/cstp/aigensoku.pdf>)

44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OECD/LEGAL/0449 (Adopted on May 22, 2019) Article 1.2, 1.3 (available from: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

45 OECD (2019), 사회 속의 인공지능, OECD Publishing, Paris/NIA (2019. 11. 22.) 88-95면

4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Draft Issues Paper on the Use of Big Data

금지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sup>47</sup>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공정성, 해석가능성, 설명가능성,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규제당국 간 협의체 등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전문가, 개발자 등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전문가들의 최대 국제 조직인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도 인공지능 설계 원칙 중 하나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근거는 언제나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특정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러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정해졌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추적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며,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설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sup>48</sup>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함에서는 공정성, 해석가능성, 설명가능성, 투명성, 추적가능성을 갖추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설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하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 관련 규제를 만들어 나갈 때에도 위와 같은 원칙들을 참고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이고 위험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며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는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보험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적절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함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미리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설계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기록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위험 이외의 다른 요소를 보험료 산출에 고려하게 되지 않을지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감독당국에서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내 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운용하면서 관련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보험료 산출 결과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필요 시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지, 보험료가 보험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규제 준수 확보 측면이나 보험계약자 권익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반드시

---

Analytics in Insurance (September 2, 2019) pp.32-35

47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 Privacy Commissioners (ICDPPC), Declaration on Ethics and Data Protec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40<sup>th</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 Privacy Commissioners (October 2018) pp. 3-5 등

48 IEEE, Ethically Aligned Design (First edition), IEEE 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2019) pp. 27-28 (available from: [https://standards.ieee.org/content/dam/ieee-standards/standards/web/documents/other/eadi1e.pdf?utm\\_medium=undefined&utm\\_source=undefined&utm\\_campaign=undefined&utm\\_content=undefined&utm\\_term=undefined](https://standards.ieee.org/content/dam/ieee-standards/standards/web/documents/other/eadi1e.pdf?utm_medium=undefined&utm_source=undefined&utm_campaign=undefined&utm_content=undefined&utm_term=undefined))

인공지능 내부에서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운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요구하고 감독하는 것이 일견 유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처럼 규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규제로 인해 이를 도입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기술의 발전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예시 사례들을 제시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계약자 등이 차별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었다는 차별행위에 대해 입증하면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즉 위험에 차이가 있고 그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법<sup>49</sup>이나 주기적으로 해당 인공지능이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위험 외의 다른 요소를 보험료 산출에 고려하지 않는지를 감독하는 방법<sup>50</sup>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험회사가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근거를 확인, 해석,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 직접 판매 관련 법적 쟁점

### (1)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도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이 경우 실제로 보험을 모집하는 것은 보험설계사 등 기존 보험 모집종사자로 인공지능은 모집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보험을 판매할 자격이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보다 보험회사가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가 모집 자격과 관련하여 더 문제 될 수 있다.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활용하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설계, 운용 주체에 따라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49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입증책임을 배분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한 사례 등 입증책임 분담을 조정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입증책임 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 해석, 추적 가능한 인공지능 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0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위험 외의 다른 요소를 보험료 산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독당국에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추적, 해석, 설명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므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도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를 하기로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설계, 운용 주체에 따라서는 위탁과 관련한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위탁과 관련된 이슈들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본고의 연구 목적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 운용하는 인공지능을 전제로 검토하도록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모집종사자)를 (i) 보험설계사, (ii) 보험대리점, (iii) 보험중개사, (iv)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제83조 제1항). 즉,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을 전제로 정하고 있어,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직접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 보험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중개나 대리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나,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도 제한적으로 열거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보험계약이 위에서 열거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통한 모집 방식으로만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모집 관련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위 보험업법상의 모집종사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현행 규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이 개입된다는 전제 하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i) 보험업법 제83조에서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여 규정하거나, (ii) 보험업법 제99조 또는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sup>51</sup> 어떠한 방식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함에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

51 백영화,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7. 6. 26.) 22-24면

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향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strong-AI)가 출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weak-AI)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sup>52</sup> 보험업법 제83조를 개정하여 인공지능을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포함하거나, 보험업법 제99조 또는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포함하는 것은 체계상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실질에서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 운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위탁'으로 구성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자본시장법규 개정을 통해 이른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에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2).

현행 보험업법 제83조에서는 위 자본시장법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람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은 간명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험업법 제83조에서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에 독자적인 인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 중 하나로 추가하기보다는, 보험회사가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보험업법 제83조에서는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만 마련한 후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방안에 대한 모색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과 보험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나 책임 관계 등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하여 그에 맞게 모집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지 여부는

52 박소영, 인공지능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책임법제 진단 및 정책 제언, Issue Weekly 2017-11 (통권 제217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7) 7면 등

정책적,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한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하에서는 큰 틀에서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 직접 판매를 허용함에 있어 어떠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인공지능이 고객과 직접 상대하게 되고, 설명의무 이행도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보험업법규는 보험에 관한 전문성 등의 차이로 인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모집중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유형별로 구체적인 설명의무 이행 방식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sup>53</sup>

따라서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아직 인공지능의 고객과의 상호소통 능력이 고객이 설명, 질문, 답변 및 이해 여부 확인 등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실무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사람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sup>54</sup>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쌍방향 소통 능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sup>55</sup>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상, 별도로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 다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제할 실익이 낮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처럼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고 설명을 할 때에는 고객이 보험을 판매하고 설명을 하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53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94면

54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문 등 참조 (available from:

<https://better.fsc.go.kr/user/extra/fsc/fileupload/download/jsp/Page.do?dataIdx=8889&funcType=lawreqreply&pathKey1=fsc>). 이는 통신판매(TM)를 통한 모집의 경우의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의무와 관련한 사안이며,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와 같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55 금융위원회도 최근 AI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부가조건을 붙여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로보텔러가 TM 모집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경험 등을 토대로 관련 규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법령해석회신문에도 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언급되어 있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와 그 방법에 대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인공지능을 보다 투명하게 활용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56</sup>

또한, 이처럼 인공지능을 보험 판매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비록 보험료 산출 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위 4.(4)항에서 살펴본 공정성, 해석가능성, 설명가능성, 추적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해 특정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운용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내 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책임자가 지속해서 인공지능을 운용하면서 관련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예시 사례들을 제시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주기적인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보험회사가 해석, 설명, 추적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결 론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향후 거의 모든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도 당연히 그 예외가 될 수 없고, 실제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보험업에도 깊게 파고들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보험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험회사,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인공지능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언제나 보험업의 변화 방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현실과 규제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제도와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규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분야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쟁점과 사람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보험업의 변화에 대해, 현행 규제 틀 안에서의 법률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기

<sup>56</sup> European Commission,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t up by the European Commission (April 2019) p.18

위하여 향후 어떠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책임 등 주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보험 관련 법규를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정비해 나갈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보험업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유주선 교수(강남대)

발표자는 보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보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별로 나누어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험영역에서 첫 단계로 “보험 인수, 보험료 산출, 리스크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 두 번째 단계인 “보험 판매”, 즉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계약 체결은 주로 보험모집보조자의 조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고객관리, 계약관리, 손해사정 및 보상 등”의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영역에, 이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상상하게 된다.

발표자는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1)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쟁점과 2) 보험회사가 기존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집중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들과 기타 확보 가능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해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첫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험을 세분화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둘째, 인공지능이 위험 외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고객의 지급 능력이거나 구매 성향, 가입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의 쟁점 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토론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우리 보험업법 제129조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전문개정 2010. 7. 23.]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은 요율 산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통계요율(통계요율에는 (i)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경험요율과 (ii)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인 참조요율이 있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이러한 비통계요율에는 (i) 보험회사가 통계에 기초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산출한 요율인 판단요율과 (ii) 보험회사가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산출한 협의요율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비통계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으며(감독규정 제7-73조 제7항),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고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7-79조의3).

발표자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현행 보험요율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통계요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통계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하는 참조요율이나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경험요율 중 어느 것을 활용하든지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된 위험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요율을 사용하는 이상 현행 규제를 준수하면서 개인화된 맞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통계요율이 아닌 비통계요율(비통계요율 중 주로 판단요율 활용 가능성이 문제된다)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현행 규정상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없다(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단서). 또한, 예외적으로 비통계요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질의 위험’의 범위가 문제된다. 동질의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험가액, 피보험 물건 규모 등 단순한 양적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가 계약자의 사고위험 관리 체계·노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별도의 정량·정성적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 등에 반영하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이 원칙일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판단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리스크 평가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동질의 위험’ 범위를 판단함에서도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건들은 모두 동일한 요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실무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는 인공지능에 의한 보험료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이라고 하는 성질의 본질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보험(Insurance, Versicherung)이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다수가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하는 경제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같은 종류의 사고 당할 위험성’이라는 표지와 ‘다수’ 및 ‘미리 금전의 각출’이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보험을 설명함에 있어 상부상조, 사회성 및 공공성이라고 특성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을 통한 위험 세분화를 통한 개인화 된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것이 보험의 대표적인 징표인 단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보험판매채널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본 규정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신문기사를 작성한다거나, 교향곡을 작곡하는 경우, 또는 그림을 그린다면 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또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창작을 한 이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둘째, 인공지능이 칫솔을 설계하거나 요리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경우 그 자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침해를 인정해야 할까?

즉, 이는 보험의 영역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즉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법의 흠결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럽연합의 결의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2017년 1월에 인공지능을 탑재

한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유럽연합은 아울러 로봇은 인류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또한 일탈에 대비하여 킬 스위치탑재를 의무화 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제조, 의료, 금융, 법률, 창작 분야 등에 점차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능력, 즉 법인격을 부여한다면 인공지능 역시 보험판매채널의 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